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2022년 3월

연구수행기관 : (협)농장과 식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의견 및 주장이며 한우자조금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제 출 문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입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3.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연구책임자 : 하광옥(농장과 식탁)

연구원 : 전상곤(경상국립대학교)

김재민(농장과 식탁)

옥미영(농장과 식탁)

연구보조원 : 김지연(농장과 식탁)

박동주(경상국립대학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2
제2장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 조사	5
제1절 용어 정의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5
제2절 기업축산 정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7
제3절 기업축산의 정의와 사육현황 조사	10
제3장 농가 인식 조사	20
제1절 농가 인식 조사 결과	20
제2절 계량모형 분석 결과	40
제3절 조사결과의 함축적 의미	53
제4장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	54
제1절 기업의 한우 사육 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55
제2절 기업자본에 대한 규제 사례 검토	57
제3절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처 방안	62
제4절 건전한 한우 사육 주체 육성 방안	67
제5장 요약 및 결론	75
1.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75
2. 연구 결과 요약	75
참고문헌	79
부 록 1. 육계산업 계열화 영향	82
부 록 2. 농가설문 조사표	86

<표 차례>

표 2-1 전문가 그룹 속성	8
표 2-2 과제 설정	8
표 2-3 한우사육주체 분류	10

표 2-4 한우 사육 관련 농업법인 현황	12
표 2-5 지역별 한우 사육 관련 농업법인 현황	13
표 2-6 기업 축산 조사 결과	14
표 2-7 주요 기업 한우 사육업 진출현황	15
표 2-8 농축협 한우사육현황	16
표 2-9 한우협동조합 사육현황	17
표 2-10 비농업인 한우 사육현황	17
표 2-11 비농업인 한우사육 증가율	17
표 3-1 2021년 1/4분기 기준 한우 사육규모별 농장수 비율(계획치)	20
표 3-2 응답 농가들의 실제 조사 비율(실제치)	20
표 3-3 설문 응답유형: 농장 경영형태	21
표 3-4 설문 응답유형: 농장 소재지역	22
표 3-5 설문 응답유형: 농장 사육규모	23
표 3-6 설문 응답유형: 농장 자산(자본금+부채)의 규모	24
표 3-7 설문 응답유형: 위탁사육 여부	25
표 3-8 위탁사육 여부: 농장 경영형태에 따라	26
표 3-9 위탁사육 여부: 지역에 따라	26
표 3-10 위탁사육 여부: 사육 규모에 따라	26
표 3-11 위탁사육 여부: 농장 자산에 따라	26
표 3-12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27
표 3-13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28
표 3-14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28
표 3-15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29
표 3-16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29
표 3-17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 자산에 따라	29
표 3-18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찬성 이유: 찬성인원(38) 기준	30
표 3-19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반대 이유: 반대인원(545) 기준	31
표 3-20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2
표 3-21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33
표 3-22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농장경영 형태에 따라	33

표 3-23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지역에 따라	33
표 3-24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33
표 3-25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농가자산에 따라	34
표 3-26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34
표 3-27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35
표 3-28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 경영형태에 따라	35
표 3-29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35
표 3-30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35
표 3-31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자산에 따라	35
표 3-32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6
표 3-33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37
표 3-34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37
표 3-35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37
표 3-36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37
표 3-37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자산에 따라	37
표 3-38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8
표 3-39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39
표 3-40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39
표 3-41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39
표 3-42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39
표 3-43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가자산에 따라	39
표 3-44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43
표 3-45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44
표 3-46 CAP1 로짓모형 추정 결과	45
표 3-47 COP1 로짓 모형 추정 결과	46
표 3-48 COP1 Odds Ratio	47
표 3-49 CAP2 로짓 모형 추정결과	47
표 3-50 CAP3(기업자본의 위탁사육) 다항 로짓모형 추정결과	49
표 3-51 CAP3: 1(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해 찬성할 확률) Odds Ratio	50
표 3-52 COP2 다항 로짓모형 추정결과	51

표 3-53 COP2(농·축협 위탁사육) Odds Ratio	52
표 4-1 일본 축산농가를 위한 경영지원제도	58
표 4-2 한육우 농가와 기업축산농장 가축사육시설 면적 예시	63
표 4-3 보험법과 방송법에서의 수직계열화 규제 방안	65
표 4-4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입 제한	66
표 4-5 친환경 저탄소 양축을 위한 정부 지원안	71
표 5-1 기업 등 비농업인 한우 사육 증가율	76
표 5-2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에 대한 한우농가 인식조사 요약	77
부표 1-1 육계생산지수 변화 추이	82
부표 1-2 주요 육계계열화 회사 실적추이	84

〈그림 차례〉

그림 2-1뱅크카우 편당	18
그림 3-1 설문 응답유형: 농장 경영형태	21
그림 3-2 설문 응답유형: 농장 소재 지역	22
그림 3-3 설문 응답유형: 농장 사육규모	23
그림 3-4 설문 응답유형: 농장 자산(자본금+부채)의 규모	24
그림 3-5 설문 응답유형: 위탁사육 여부	25
그림 3-6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27
그림 3-7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찬성 이유: 찬성인원(38) 기준	30
그림 3-8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반대 이유: 반대인원(545) 기준	31
그림 3-9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2
그림 3-10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34
그림 3-11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6
그림 3-12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8
그림 4-1 가축분뇨 교반기	64
그림 4-2 가축분뇨 탈취탑	64
부도 1-1 일반육계농민과 계열화사업자의 공급곡선	8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 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1970년대 본격화되었으며, 육계와 관련하여서는 기업과 농가 간의 충돌과 갈등 또한 매우 많아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한우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크게 연구된 자료가 없음.
- 이는 한우 사육의 전업화가 1990년대 후반 시작됐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뤄진 한우 파동 이후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생산자협회가 설립된 것도 원인임.
-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업 진입은 1970~1980년대 정부의 축산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본격화 되었고, 기업의 축산농장 운영에 대해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가축의 직접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게 됨.¹⁾
- 이후 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직접투자 방식에서 농가에 가축사육을 위탁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사료업체와 종돈업체, 육가공업계가 돼지와 육계·오리를 중심으로 축산계열화사업이 본격화 됨.
- 육계와 오리는 2010년을 전후해 위탁사육 비중이 90%를 넘어섰으며, 돼지의 경우도 20% 내외가 위탁사육형태로 전환된다. 한우의 위탁사육은 일부 영농조합, 지역축협, 사료회사, 도축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육계와 오리, 양돈 품목과 비교하면 진입 초기라 할 수 있음. 한우업계는 이 같은 위탁사육방식이 기업자본의 한우사육업 진출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해 현재 위탁사육 확대를 경계하고 있음.²⁾
- 위탁사육을 중심으로 하는 한우계열화사업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한우농가의 사육 포기가 이어지면서 한우농가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강원 평창축협이 처음 실시했으며 현재 30여개 지역축협과 민간 기업들이 위탁사육 또는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³⁾

1) 기업축산 모든 1천마리로 제한. 매일경제(1990.1.23. 15면)

2) 김재민(2015) 기업자본의 재배와 사육부분 진출의 역사. 농장에서 식탁까지. Vol.5 (2016년 9월), pp.14~32

3) 하광옥(2017)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수립 연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로 한우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의 한우 사육업에 진입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사육업에 기업의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 기업자본의 축산업 생산부문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위탁사육이 어느 수준까지 실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대응방안을 제시함.
- 설문조사와 기존 통계자료, 실태조사, 선행연구자료 등을 이용해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을 가정하여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 및 위탁사육 대처방안을 제시함.

2. 연구범위

가.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 현황

- 한우농가가 아닌 주체의 한우사육 현황 조사로 기업의 한우사육과 함께 협동조합 등 농가와 경합이 되는 주체의 한우사육 등의 실태를 조사

나. 기업자본의 한우사육부문 진출에 대한 인식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이 한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수렴

다. 기업자본 한우산업 진출 문제점과 대응 방안

- 기업이 한우사육업 진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우사육농가 중심의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안

3.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범 위	자 료
축산계열화 산업문제	정민국 외(2010) 축산계열화사업 평가와 발전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외(2013) 도축장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김재민(2014) 닭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시대의 창 우병준·김형진(2015), 축산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육계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보고서 p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재민(2016) 기업자본의 축산업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황주홍 의 원 주관 정책토론회 자료집 하광옥(2017)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김한중(2020)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농특위 서성원(2017)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부문 진출의 영향 : 정책 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장에서 식탁까지 2016년 10월호 농장에서 식탁까지 2016년 9월호

나. 기업 등의 한우사육 실태 조사

구 분	자 료
조사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2월
조사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료, 전화, 이메일, 심층인터뷰
조사내용	한우위탁사육 경영체, 사육두수, 참여농가수
조사대상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한우협회 시도지회·시군지회 한우협동조합 연합회 농협사료 각 지사 사료회사 관계자 지역축협 관계자

다. 한우 조직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Focus Group Interview, FGI)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15:30~17:00)
토론내용	기업축산의 정의 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입에 따른 대응 방안
조사대상	사육농가(1) 농협경제지주(1) 전국한우협회(1) 학계(2)

라. 기업자본의 한우사육업 진입에 대한 인식조사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2년 1월 15일 ~ 2022년 2월 10일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항목	■ 기업자본의 한우사육업 진입에 대한 의견 ■ 기업의 위탁사육에 대한 의견 ■ 농축협의 생축장 및 위탁사육에 대한 의견																																									
조사계획	<table><tr><td></td><td>20두 미만</td><td>20~50두</td><td>50~100두</td><td>100두 이상</td><td>합계</td></tr><tr><td>①서울인천경기 강원</td><td>7.0%</td><td>3.7%</td><td>2.2%</td><td>1.3%</td><td>14.2%</td></tr><tr><td>②대전세종충청</td><td>10.5%</td><td>5.2%</td><td>2.7%</td><td>1.6%</td><td>20.1%</td></tr><tr><td>③광주전라제주</td><td>15.1%</td><td>7.5%</td><td>4.2%</td><td>2.6%</td><td>29.4%</td></tr><tr><td>④부산대구울산 경상</td><td>21.1%</td><td>8.4%</td><td>4.2%</td><td>2.7%</td><td>36.3%</td></tr><tr><td>합계</td><td>53.7%</td><td>24.8%</td><td>13.3%</td><td>8.2%</td><td>100%</td></tr></table>							20두 미만	20~50두	50~100두	100두 이상	합계	①서울인천경기 강원	7.0%	3.7%	2.2%	1.3%	14.2%	②대전세종충청	10.5%	5.2%	2.7%	1.6%	20.1%	③광주전라제주	15.1%	7.5%	4.2%	2.6%	29.4%	④부산대구울산 경상	21.1%	8.4%	4.2%	2.7%	36.3%	합계	53.7%	24.8%	13.3%	8.2%	100%
		20두 미만	20~50두	50~100두	100두 이상	합계																																				
	①서울인천경기 강원	7.0%	3.7%	2.2%	1.3%	14.2%																																				
	②대전세종충청	10.5%	5.2%	2.7%	1.6%	20.1%																																				
	③광주전라제주	15.1%	7.5%	4.2%	2.6%	29.4%																																				
	④부산대구울산 경상	21.1%	8.4%	4.2%	2.7%	36.3%																																				
	합계	53.7%	24.8%	13.3%	8.2%	100%																																				

제2장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 조사

제1절 용어 정의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우 사육업은 농업(01)-축산업(012)-소 사육업(0121)-육우 사육업(01212)에 포함되는 활동을 말하며,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국내에서는 육우 중 한우 품종이 다수를 차지하며 육우 사육업보다는 ‘한우 사육’, ‘한육우 사육’으로 보다 많이 불리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
 - 한우 사육 주체는 한우를 번식, 사육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어업숙련 종사자(6)- 농축산 숙련직(61)-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613)- 가축 사육 종사원(6132)-육우 사육자(61321) 범주에 속함.
- 축산법
 - ‘가축 사육업(축산법 제2조 4)’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가축 사육 주체에 대해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축산법 제22조 1항)’로 표현되어 있음. 경영이라는 표현은 축산법보다 상위 법률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에 등장함.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서는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음. 즉, 농업인이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가축사육의 주체라 할 수 있음.
-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인의 조건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정의하

면서 농업경영의 주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의하였고, 현재 관련 법령안에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 할 수 있음.

○ 기업축산 용어의 등장

- 국내 축산업의 기업화는 축산물 공급 부족 등의 난맥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수립된 축산진흥정책에 포함되었으며, 대재벌의 축산업 참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기업축산’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⁴⁾
- 1960~1970년대 ‘기업축산’의 개념은 농가들이 부업 등으로 하는 소규모 양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축산업을 말하며, 국립국어원이 가족농의 반대 개념의 기업농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음. 정부의 계획과 달리 기업축산이 활성화되지 않자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재벌·대기업의 축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축산은 대재벌·대기업이 영위하는 축산업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음.

○ 하광옥(2017)

- 한우사육주체를 농업인, 농업법인, 한우계열화사업주체, 농축협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중 기업이 출자한 농업법인과 한우계열화사업 주체를 기업축산으로 분류하였고, 농축협도 한우농가와 경합하는 방식으로 한우사육을 할 경우 기업으로 분류하였음.

○ 김한중(2020)

- 축산주체를 농업 중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하고, 농업인 개인과 달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주체가 농민 중심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 중심인지에 따라 농민 주도 농업법인과 자본주도 농업법인으로 정의하였음.
- 이외에도 농민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또한 사육 주체로 볼 수 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를 기업형과 농민 중심의 수평적 계열화 모델인 협동조합은 기업축산의 반대 개념으로 구분함.

4) 축산진흥계획 확정. 동아일보. 1968.07.30. 3면 / 재벌의 축산투자 적극유도. 경향신문. 1974.05.18. 1면

제2절 기업축산 정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 조사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업 진입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먼저 뒤따라야 함.
- 과거 축산법 제27조에서 기업의 축산업 진입을 규제할 당시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해 양돈과 양계업 진입을 규제하였으나 관련 규제를 풀면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상황.
- 이와 함께 기업 축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놓을지도 의견 수렴이 필요.

나. 연구 방법

-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 심층 면접)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고자 할 때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정성적 조사 방법.
- FGI는 실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유익한 생각이나 의견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활용됨.
- 이러한 논의과정은 양적 데이터만으로 해석이 어렵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 인식을 파악하고자 할 때, 서로의 의견에 대한 특정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

다. FGI 참여자 구성

- 본 연구에서는 20년 이상 한우를 사육해온 농가 1인과 한우 산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인, 학계 2인 등 총 6인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21년 12월 26일 조사를 수행함.

-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한우산업에 대한 대표성과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표 2-1 전문가 그룹 속성

구분		전문가 그룹					
		A	B	C	D	E	F
농가		●					
기관·단체	협회		●				
	자조금			●			
	농협				●		
학 계	대학					●	
	연구소						●

라. FGI 대상 과제 설정

- 농특위 소분과회의와 과업 등을 토대로 연구진이 설정한 FGI 대상 정책과제는 표 2-2와 같이 기업축산 정의, 기업축산 범위,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 대처 방안임.

표 2-2 과제 설정

구분	정책과제
전문가 그룹	기업축산 정의
	기업축산 범위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 대처 방안

마. FGI 세부 조사 및 분석 방법

- FGI를 통해 현시점에서 기업의 사육업 진출과 관련한 정의 1개 질문, 규제의 대상 범위 1개 질문, 대기업 축산업 진출 규제 1개 질문으로 구성.
 - 기업 한우사육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 규제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기업축산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FGI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각 정책의 찬반과 함께 참석 전문가들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파악.

2. FGI 응답 내용 정리

가. 기업축산 정의·범위

- 기업축산의 정의는 조사 대상과 규제 대상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
- 전문가들은 규모에 따라 규제 대상을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자본에 의해 설립되거나 기업에 의존해 사육하는 모든 농장은 기업농장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규모에 따른 분류시 1,000두 이상, 또는 2,000두 이상 사육농가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 사육농가가 사육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한 경우는 농업인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시.
- 농축협의 생축장과 기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브랜드사업 수급조절, 우량송아지 생산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하며, 비육을 위해 대규모로 사육하거나 위탁사육을 하는 경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중소규모 농가라도 기업의 지원 받아 사육 가능하기 때문임.
- 어디까지를 기업축산으로 볼 것이냐 불명확, 반대로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중소농, 가족농, 전업농을 분류하는 게 명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함.

나. 규제 방안

- 농업인이 받는 지원 사업 대상에서 기업 제외
 -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 정책자금·보조사업 대상 제외
- 타 산업 분야 기업 규제 참조
- 농가 지원 확대
 - 중소가족농, 전업농 육성 통해 경쟁력 확보
 -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기업 등은 제외
- 기업의 책임 강화
 - 수급조절 의무 부여
 - 방역 관련 비용(살처분, 백신 등) 기업 책임 강화
 - 환경비용 공공지원 없이 기업이 부담(분뇨처리 비용, 악취 방지 비용 등)

제3절 기업축산의 정의와 사육현황 조사

1. 기업축산의 정의

- 앞의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토대로, 한우사육주체는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인 중심의 농업법인, 기업 중심의 농업법인, 한우계열화사업자, 생축장과 위탁사육을 하는 농축협 등이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3 한우사육주체 분류

	농업인	농업법인	계열화사업자	농축협
농업인 자본	○	○	○	△
기업 자본		○	○	

김한중(2020년)

- 이 연구에서 기업축산은 아래와 같은 범주로 구분하고자 함.

- ① 농업법인 중 기업이 출자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②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영농조합
- ③ 한우계열화사업자
- ④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농축협)⁵⁾

2. 기업축산의 사육현황 조사

2.1. 조사개요

가. 조사 대상

- 기업축산은
 - 기업이 출자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법인
 - 농가에 한우를 위탁해 소를 사육하는 주체로 한정(농축협의 생축장과 위탁사육 등 즉 농업인 이외의 사육주체가 경영하는 농장도 포함)

나. 조사 방법

- 기초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물이력제 자료를 근거로 기업으로 의심이 되는 농장의 명단과 연락처 등을 제공 받아 이를 근거로 의심 농장에 대한 전화조사, 한우협회 내부자료와의 대조, 농협사료, 지역축협배합사료공장 영업조직, 농축협 지도계, 사료회사 영업직원 전국한우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출자하거나 위탁해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특정하였음.
- 전국한우협회의 협조를 얻어 시도지회, 시군지회에 지역 내 기업축산, 위탁사육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5)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주체가 농업인이긴 하지만 이들이 개별 한우 사육농가와 경합관계(생축장과 위탁사육을 통해)에 있어, 기업 축산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 항목도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이와 별도로 축산계열화사업, 배합사료업 등 축산 관련 상장사 공시자료를 통해 한우 사육업 진출한 법인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법인이 양돈, 육계, 오리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었고, 한우를 사육하는 법인도 한우만을 사육하지 않고 다른 축종을 함께 사육하면서 한우 사육법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 당초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충청지역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기업 특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
- 이렇게 특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북과 경기남부지역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수된 정황 자료를 활용해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 사육 규모 등을 조사함.

다. 한우관련 법인 현황

표 2-4 한우 사육 관련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소, 마리, 호)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법인수	243	126	164	222	249	287
농장수	351	175	216	309	339	392
사육두수	39,733	30,251	31,815	40,656	41,122	50,962
법인당 사육규모	164	240	194	183	165	178
농장당 사육규모	113	173	147	132	121	1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우관련 농업법인은 287개, 농장수는 392개 사육규모는 5만962두로 조사됨. 법인당 사육규모는 178두이고 농장당 사육두수는 130두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20년 사육두수는 1만1299두가 증가하였고, 법인수는 44개, 농장수는 41개가 증가함.

표 2-5 지역별 한우 사육 관련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소, 마리, 호)

시도	법인수	시설개수	사육두수
경상북도	33	80	16,371
충청남도	45	67	11,983
전라남도	52	53	8,354
경기도	19	27	4,062
전라북도	38	50	3,905
강원도	21	24	2,090
제주도	37	38	1,670
충청북도	14	19	1,636
경상남도	20	22	618
세종시	5	9	244
부산광역시	1	1	17
대구광역시	1	1	10
대전광역시	1	1	2
총계	287	392	50,96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지역별로 보면 법인은 전라남도가 52개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과 사육규모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음.
- 사육규모는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지역의 법인수나 사육규모는 상위 3개 지역과 비교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2. 기업의 한우사육 실태조사

가. 기업

- 실태조사 결과 30여개 기업이 61,296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우협회 지부 서면조사, 농협 계통사료공장의 협조 등을 통해 49,000여두 규모의 한우가 기업을 통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경북과 경기지역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실제 사육두수를 문의한 결과 기업은 61,296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2-6 기업 축산 조사 결과

(단위 : 개소, 마리, 호)

지역	기업	농장수	사육두수
강원도	3	4	895
경기도	4	6	2,873
경상남도	1	1	188
경상북도	7	84	29,384
전남	7	9	2,702
전북	2	6	1,751
제주	1	1	1,491
충남	10	16	8,208
충북	2	7	2,017
기타			11,787
합 계	37	134	61,296

주) 기타에 기업수와 농장수는 기업의 인터뷰를 통해 사육두수는 추가로 조사되었으나 사육하는 농장의 위치나 농장의 수에 관해서는 진술에 협조해 주지 않아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진되며, 지역의 사육현황에 편입할 수 없어 기타로 분류함.

-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가장 많고 충남이 뒤를 잇고 있으며, 경북의 기업 측 사육두수가 많은 것은 한우사육두수가 기본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많고, A사가 경북을 중심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기 때문임. A사는 대규모로 한우사육을 하던 농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던 도축장을 인수하고, 도축장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사육두수를 늘리고, 위탁사육 등을 시행하면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가공 유통하는 기업이 됨.
- 충남의 경우는 C그룹 계열사의 직영농장이 충남 예산에 있기 때문으로 C그룹은 돼지계열화사업, 육계계열화사업, 오리계열화사업에 있어서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충남 예산에 경영난으로 매물로 나온 대규모 한우농장을 인수하면서 한우 사육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됨.
- 기타는 11,787두 규모로 조사되었는데, 경북과 경기지역 현장간담회 때 획득한 기업축산 진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하여 사육 규모를 확인하였고,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술한 사육 규모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실제 현장에서 회자하고 있는 기업의 한우 사육 진출 규모가 사실임을 확인함.

- 해당 기업에서는 사육 규모까지는 진술하였으나, 어떤 지역에서 몇 개의 농장을 통해 사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에 응하지 않아 해당 사육두수를 지역별 기업의 한우 사육 진출 현황에는 편입할 수 없어 기타로 분류하여 표시하였음.

표 2-7 주요 기업 한우 사육업 진출현황

(단위 : 개소, 마리, 호, %)

기업군	법인	농장수	사육규모	점유율
전체	33	134	61,296	100%
A민속LPC	민속한우농업회사법인,민속친한우농업회사법인,민속한우영농조합법인	73	30,000	49%
B하림그룹	팜스코천평농장,제일사료,순우리한우	11	9,000	15%
C이지바이오	우리손영농조합,송암축산,팜스월드,우리손예산농장	13	7,000	11%
D현대자동차	현대서산농장	1	3,000	5%
E설성목장	설성목장농업회사법인	3	3,000	5%
F한진그룹	제동목장	1	1,700	3%
G대한사료	대한에프에스주식회사	6	1,050	2%
기타		26	6,546	10%

- 주요 기업 한우 사육업 진입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A사가 3만두 규모로 가장 크고, 국내 최대 축산회사인 B그룹이 9,000두로 뒤를 잇고 있음. 현장 실태조사 및 B그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B그룹 사육규모는 9,000~12,000두 규모로 추정됨.
- 경기도 E기업의 경우는 직영농장과 위탁사육농장이 경기, 강원, 충청권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1만두 가까이 사육하고 있을 것이라는 증언도 있었으나 해당 법인에서는 사육두수 공개를 거부하여, 인근 농가의 진술, 한우협회 내부자료, 언론 인터뷰 자료 등을 종합해 3,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D사, F사는 대기업들의 농업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시절 한우농장을 시작해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제분업과 배합사료 제조 유통으로

유명한 G사는 2021년 1월 현재 1천여두 사육하고 있었으나 한우보다 육우를 더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치로 유명한 H기업도 육우 사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한우 송아지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어, 육우 사육농장 상당수가 한우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나. 농·축협

- 농가 협업조직 중 농축협은 94개 조합이 368개 농장을 운영 중이며, 총 64,728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 농축협은 직영생축사업장, 위탁사육, 예탁사육 등이 포함됨.
- 사육규모로 보면 전북이 21,687두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 12,823두, 경북 10,817두로 나타남.
- 주로 농촌형 조합이 한우 사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됨.

표 2-8 농축협 한우사육현황

(단위 : 개소, 마리, 호, %)

지역	조합	농장수	사육두수
강원도	8	10	2,564
경기·인천	8	21	6177
경상남도	18	19	5,798
경상북도	15	57	10,817
전남	18	78	12,823
전북	10	145	21,687
제주	2	2	615
충남·세종	11	28	2,902
충북	4	8	1,345
합 계	94	368	64,728

- 한우협동조합의 경우 4개 조합에서 7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육 규모는 2,369마리로 조사되었음.

표 2-9 한우협동조합 사육현황

(단위 : 개소, 마리, 호)

지역	조합	농장수	사육두수
경기·인천	1	2	1355
전북	2	3	306
충남	1	1	206
충북	1(경기)	1	502

표 2-10 비농업인 한우 사육현황

(단위 : 마리, %)

총사육두수	비농업인	기업축산농장	농축협	한우조합
3,188,961 (1,116,136)	128,393	61,296	64,728	2,369
100%	4% (12%)	1.92%	2.03%	0.07%

주1) 총 사육두수 2021년 1월 기준

주2) () 거세우 사육두수 및 전체 거세우 사육두수 중 비농업인이 사육하는 비중

- 한우농가 이외의 주체가 사육 중인 한우 마릿수는 12만8,393두로 전체 사육두수 대비 4%로 수준임.

표 2-11 비농업인 한우사육 증가율

(단위 : 마리, %)

	2017년3월	2021년1월	증가율
총사육두수	2,510,519	3,188,961	27
비농업인 한우 사육두수	69,248	128,393	85

- 한우자조금에서는 비농업인 한우 사육업 진출 현황조사를 2017년 실시한 바 있음. 선행조사와 비교한 결과 한우 사육두수는 5만9,145두가 증가해 증가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사육두수는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됨.

<참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과 한우 사육의 결합

- 지금까지 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배합사료 회사, 육가공회사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음. 2000년대 후반 투자회사들이 한우 펀드라는 상품을 출시하고 농업회사법인, 한우브랜드 경영체에 투자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2010년대 한우 가격이 폭락하며 해당 투자모델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최근 한우 자산 플랫폼 벵카우를 운영하는 스타키퍼는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약정된 한우 사육 농가에 송아지를 입식시키고 사육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의 위탁사육 형태임.
- 이후 한우 출하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농가와 투자자 간 지분율대로 분배되며 한 마리의 송아지를 여러 명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구매도 가능한 모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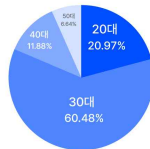
1차 펀딩 20마리

21.05.31~21.06.13 (14일 소요)

가입고객 566명

구매고객 141명

총 매출액 99,1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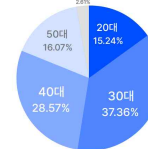
5차 펀딩 64마리

21.11.29 (약 20분 소요)

가입고객 9,453명

구매고객 411명

총 매출액 275,9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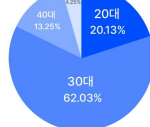
2차 펀딩 37마리

21.07.07~21.07.14 (8일 소요)

가입고객 1,555명

구매고객 211명

총 매출액 189,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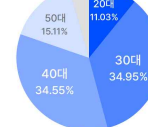
6차 펀딩 86마리

22.01.25 (약 40분 소요)

가입고객 15,320명

구매고객 318명

총 매출액 389,0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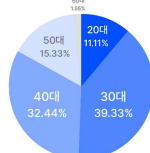
3차 펀딩 32마리

21.08.23 (당일 마감)

가입고객 3,060명

구매고객 205명

총 매출액 153,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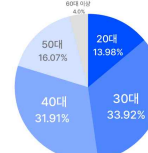
7차 펀딩 106마리

22.02.10 (하루 소요)

가입고객 16,474명

구매고객 1,253명

총 매출액 1,020,3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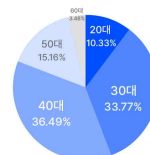
4차 펀딩 104마리

21.10.20 (당일 마감)

가입고객 5,921명

구매고객 650명

총 매출액 540,420,000원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그래프는 구매고객의 연령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펀딩금액 확대, 펀딩기간 축소

그림 2-1 벵카우 펀딩

- 2021년 5월 20마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투자자 3,189명을 모집해 총 459마리의 송아지를 공동구매하였으며, 총투자금은 26억6,705만 원임.
- 축산 관련 기업의 한우 사육업 진입과 달리 투자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투자는 하지만 농장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임.

3. 조사의 한계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농업인이 사육하는 한우농장 수와 사육두수는 명확한 행정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추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앞서 밝혀진 A사, B그룹 계열, C그룹, E사의 경우 현장 관계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육 규모를 추정하였고, 각 그룹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그 사육 규모를 확정할 수 있었지만, 배합사료 회사와 육가공업체, 농축협 등이 실시하는 위탁사육 규모는 경영체들의 비협조, 참고할 행정자료 등의 부재로 인해 명확한 조사가 불가능하였음.
- 실제 경북, 경기 현장간담회에서는 사료 회사가 위탁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곳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농장주도 사료대리점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기업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농장의 경우는 거의 파악이 되었으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농조합법인도 위탁사육과 마찬가지로 모두 특정하였다 할 수 없음.
- 현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위탁사육이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위탁을 통해 사육업에 진출하는 사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한우에서도 사육 주체별 사육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3장 농가 인식 조사

제1절 농가 인식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본 조사는 기업자본이 한우산업 진출에 있어서 농가들의 반응과 기업자본의 진출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농가들이 긍정적인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국의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해 총 611명이 응답함. 농가들의 경영 형태, 위탁사육 여부, 지역, 규모, 농가 자산까지 농장의 특성에 대한 문항과 기업자본이 한우 사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농·축협이 생육장에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총 12개의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짐. (설문 조사표는 부록 2 참조).
- 원래 계획은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 근거하여 모두 1,000 농가의 사육규모와 지역별로 할당해 아래와 같이 최대한 층화추출을 하고자 노력함. 조사 결과 대전/세종/충청의 응답 비율이 통계청 자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 응답 비율이 높았음. 사육 규모로는 20두 미만 농가의 응답 비율이 낮고, 50두 이상 규모 농가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 2021년 1/4분기 기준 한우 사육규모별 농장수 비율(계획치)

	20미만	20~50두	50~100두	100두 이상	합계
①서울인천경기강원	7.0%	3.7%	2.2%	1.3%	14.2%
②대전세종충청	10.5%	5.2%	2.7%	1.6%	20.1%
③광주전라제주	15.1%	7.5%	4.2%	2.6%	29.4%
④부산대구울산경상	21.1%	8.4%	4.2%	2.7%	36.3%
합계	53.7%	24.8%	13.3%	8.2%	100%

표 3-2 응답 농가들의 실제 조사 비율(실제치)

	20미만	20~50두	50~100두	100두 이상	합계
①서울인천경기강원	1.0%	2.1%	4.3%	4.3%	11.6%
②대전세종충청	0.7%	3.9%	3.6%	2.7%	10.9%
③광주전라제주	0.5%	6.5%	6.8%	8.2%	22.1%
④부산대구울산경상	5.0%	15.2%	18.3%	16.9%	55.4%
합계	7.2%	27.7%	33.0%	32.1%	100%

2. 응답자 특성

가. 농장 경영형태

- 설문에 참여한 농가들을 농장 경영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개인이 565(96.4%)로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다음으로 협동조합 11(1.9%),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6(1%), 기타 4(0.7%) 순으로 조사됨.

그림 3-1 설문 응답유형: 농장 경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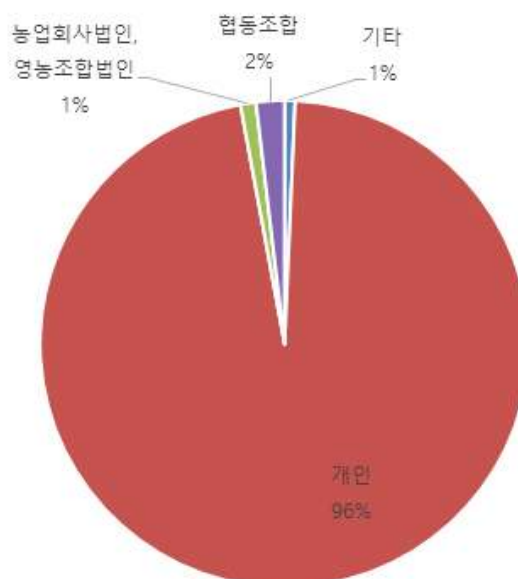


표 3-3 설문 응답유형: 농장 경영형태

(단위 : 명)

응답	응답수	비율
개인	565	96.4%
협동조합	11	1.9%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6	1%
기타	4	0.7%
계	586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나. 농장 소재지역

- 설문에 참여한 농가들의 지역 분포를 보면,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이 324(55.3%)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광주, 전라, 제주 129(2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68(11.6%), 대전, 세종, 충청 65(11.1%) 순으로 조사됨.

그림 3-2 설문 응답유형: 농장 소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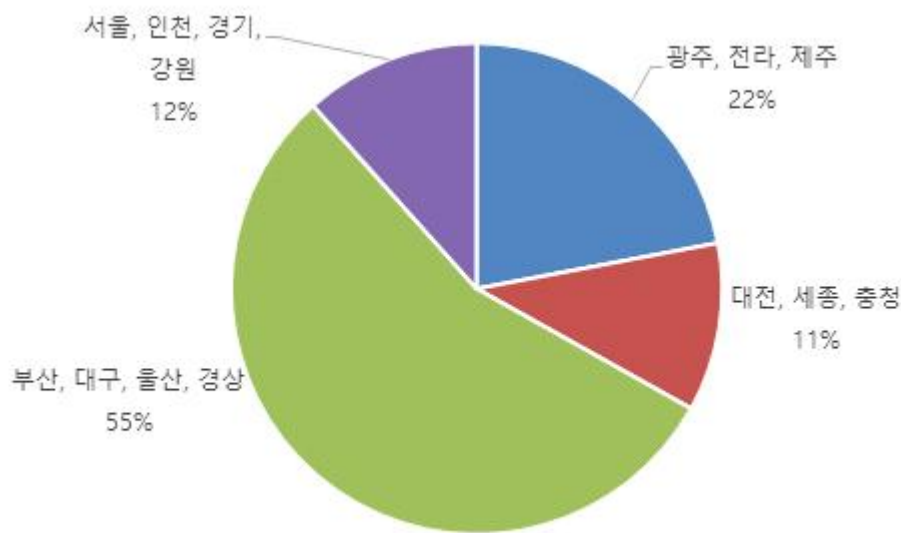


표 3-4 설문 응답유형: 농장 소재지역

(단위 : 명)

응답	응답수	비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68	11.6%
대전, 세종, 충청	65	11.1%
광주, 전라, 제주	129	22.0%
부산, 대구, 울산, 경상	324	55.3%
계	586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다. 농장 사육규모

- 설문에 참여한 농가들의 사육규모 분포를 보면, 50~99두의 사육 농가가 194(3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두 이상 188(32.1%), 20~49두 구간이 162(27.6%), 20두 미만 42(7.2%) 순으로 조사됨.

그림 3-3 설문 응답유형: 농장 사육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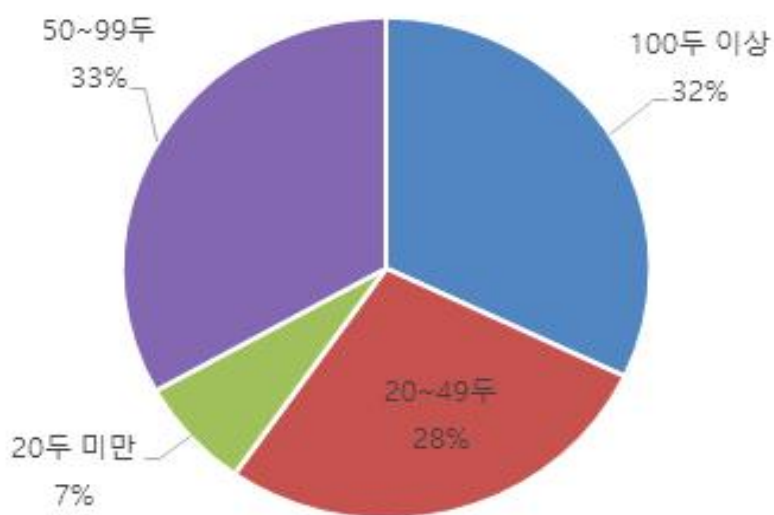


표 3-5 설문 응답유형: 농장 사육규모

(단위 : 명)

응답	응답수	비율
20두 미만	42	7.2%
20~49두	162	27.6%
50~99두	194	33.1%
100두 이상	188	32.1%
계	586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라. 농장 자산(자본금+부채)

-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들의 농장 자산에 대한 분포를 보면, 5억 미만인 농가가 약 54.3%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5~10억은 29.7%, 10~20억과 20억 이상은 12.9%와 3.1%로 조사됨.

그림 3-4 설문 응답유형: 농장 자산(자본금+부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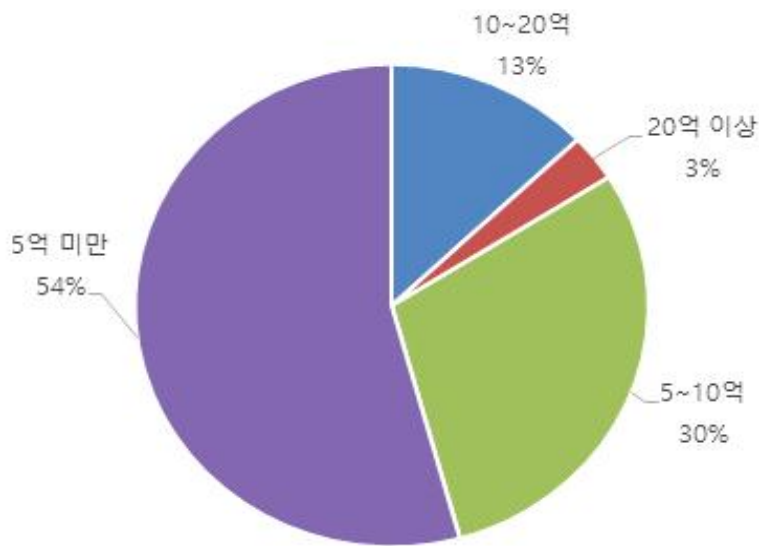


표 3-6 설문 응답유형: 농장 자산(자본금+부채)의 규모

(단위 : 명)

응답	응답수	비율
5억 미만	311	54.3%
5~10억	170	29.7%
10~20억	74	12.9%
20억 이상	18	3.1%
계	573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38)은 제외하였음.

마. 위탁사육여부

- 위탁사육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가 11(1.9%),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575(98.1%)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농가가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위탁사육 여부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세부 범주별로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농장 경영형태 중 협동조합 소속 농가의 위탁사육 비율이 9.1%로 전체의 1.8%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규모별로는 100두 이상 규모의 위탁사육 비율이 3.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두 미만 농가에서의 비율이 2.4%로 나타남. 농장 자산규모에 따라서는 20억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의 위탁사육 비율이 5.6%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20억 규모의 비율이 4.1%로 나타났음.

그림 3-5 설문 응답유형: 위탁사육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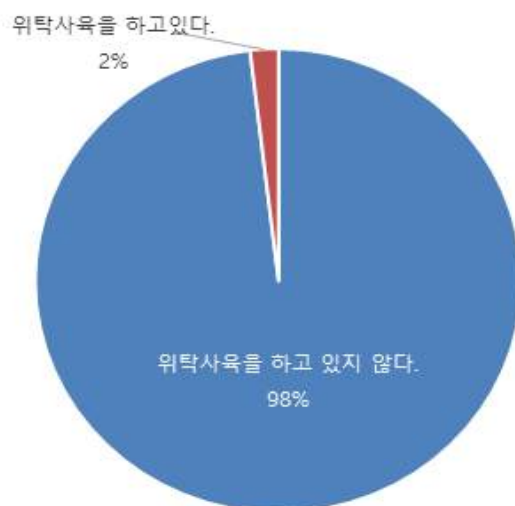


표 3-7 설문 응답유형: 위탁사육 여부

(단위 : 명)

응답	응답수	비율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11	1.9%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575	98.1%
계	586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표 3-8 위탁사육 여부: 농장 경영형태에 따라

(단위 : 명)

	위탁O	위탁X	계
개인	10(1.8%)	555(98.2%)	565(100%)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0(0.0%)	6(100%)	6(100%)
협동조합	1(9.1%)	10(90.9%)	11(100%)
기타	0(0.0%)	4(100%)	4(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표 3-9 위탁사육 여부: 지역에 따라

(단위 : 명)

	위탁O	위탁X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2.9%)	66(97.1%)	68(100%)
대전, 세종, 충청	1(1.6%)	63(98.4%)	64(100%)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0.3%)	323(99.7%)	324(100%)
광주, 전라, 제주	7(5.4%)	122(94.6%)	129(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6)은 제외하였음.

표 3-10 위탁사육 여부: 사육 규모에 따라

(단위 : 명)

	위탁O	위탁X	계
20두 미만	1(2.4%)	41(97.6%)	42(100%)
20~49두	1(0.6%)	161(99.4%)	162(100%)
50~99두	3(1.5%)	191(98.5%)	194(100%)
100두 이상	6(3.2%)	182(96.8%)	18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표 3-11 위탁사육 여부: 농장 자산에 따라

(단위 : 명)

	위탁O	위탁X	계
5억 미만	5(1.6%)	304(98.4%)	309(100%)
5~10억	2(1.2%)	168(98.8%)	170(100%)
10~20억	3(4.1%)	71(95.9%)	74(100%)
20억 이상	1(5.6%)	17(94.4%)	1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40)은 제외하였음.

3. 기업 및 농·축협 사육에 대한 농가 의견

가.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 기업자본이 한우 사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표3-12> 같다. 설문조사 참여 인원 611명 중 무응답 28명을 제외하고 찬성은 38(6.5%), 반대는 545(93.5%)로 대다수의 한우 농가는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농장의 위탁사육 여부, 농장의 경영형태, 지역, 사육규모, 농장 자산에 따른 설문 문항의 응답을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장 특성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3-6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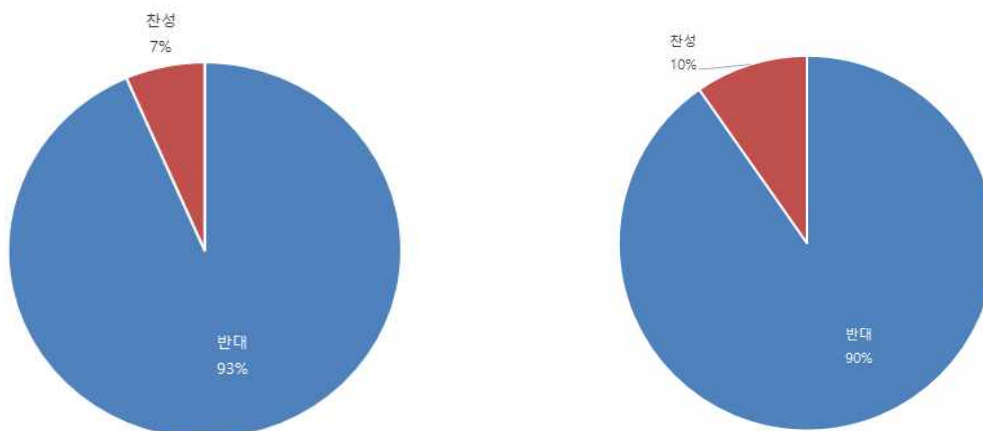


표 3-12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단위 : 명)

응답	가중치 조정 이전		가중치 조정 이후	
	응답수	비율	응답	비율
찬성	38	6.5%	찬성	9.7%
반대	545	93.5%	반대	90.3%
계	583	100%	계	100.0%

주1)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8)은 제외하였음.

주2) 가중치 조정 이후는 실제 응답한 농가의 응답비율을 4개 규모별로 분류하여 여기에 가중치 (표1의 규모별 농가 비율)를 적용하여 산출함.

- 농장의 위탁사육 여부에 따른 분류 결과, 위탁사육 농가는 찬성이 1(9.1%), 반대가 10(90.9%),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찬성 37(6.5%), 반대 534(93.5%)으로 나타남. 모두 반대 의견이 대다수이나 위탁사육 농가일수록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찬성의견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1(9.1%)	10(90.9%)	11(100%)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37(6.5%)	534(93.5%)	571(100%)

주: 전체 응답자 611명 중 응답없음(29)은 제외하였음.

- 농장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 결과, 개인의 경우 찬성이 35(6.2%), 반대가 526(93.8%)이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표본의 수가 비교적 적지만 모든 응답자가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반대하였음. 다만, 협동조합 소속 농가의 찬성 비율이 18.2%로 전체 찬성 비율 6.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4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개인	35(6.2%)	526(93.8%)	561(100%)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0(0%)	6(100%)	6(100%)
협동조합	2(18.2%)	9(81.8%)	11(100%)
기타	1(25%)	3(75%)	4(100%)

주: 주: 전체 응답자 611명 중 응답없음(29)은 제외하였음.

- 지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포함이다.하여 경상권, 광주, 전라, 제주에서는 찬성이 모두 약 6%이며, 반대가 94% 대로 나타난 반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찬성이 8(12.5%), 반대가 56(87.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5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5.9%)	64(94.1%)	68(100%)
대전, 세종, 충청	8(12.5%)	56(87.5%)	64(100%)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9(5.9%)	303(94.1%)	322(100%)
광주, 전라, 제주	7(5.5%)	121(94.5%)	128(100%)

주: 전체 응답자 611명 중 응답없음(29)은 제외하였음.

- 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른 응답의 결과로 20두 미만 농가에서의 찬성 비율이 11.9%로 다른 사육규모의 농가들에 비해 비교적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49두 규모 농가의 찬성비율이 9.4%, 100두 이상 5.4%, 50~99두 4.1% 순으로 나타남.

표 3-16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20두 미만	5(11.9%)	37(88.1%)	42(100%)
20~49두	15(9.4%)	145(90.6%)	160(100%)
50~99두	8(4.1%)	186(95.9%)	194(100%)
100두 이상	10(5.4%)	176(94.6%)	186(100%)

주: 전체 응답자 611명 중 응답없음(29)은 제외하였음.

- 농장 자산에 따른 응답의 결과를 보면, 자산이 5억 미만인 농장에서 찬성 24(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7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 자산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5억 미만	24(7.8%)	284(92.2%)	308(100%)
5~10억	5(3%)	163(97%)	168(100%)
10~20억	5(6.8%)	69(93.2%)	74(100%)
20억 이상	0(0%)	18(100%)	18(100%)

주: 주: 응답자 611명 중 응답없음(43)은 제외하였음.

○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찬성하는 이유

- 다음은 기업자본이 한우 사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임.
-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해 찬성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계약 사육 농가에 수입을 올릴수 있는 기회 제공 16(42.1%)과 한우 사육 생산성 증가 13(34.2%)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7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찬성 이유: 찬성인원(3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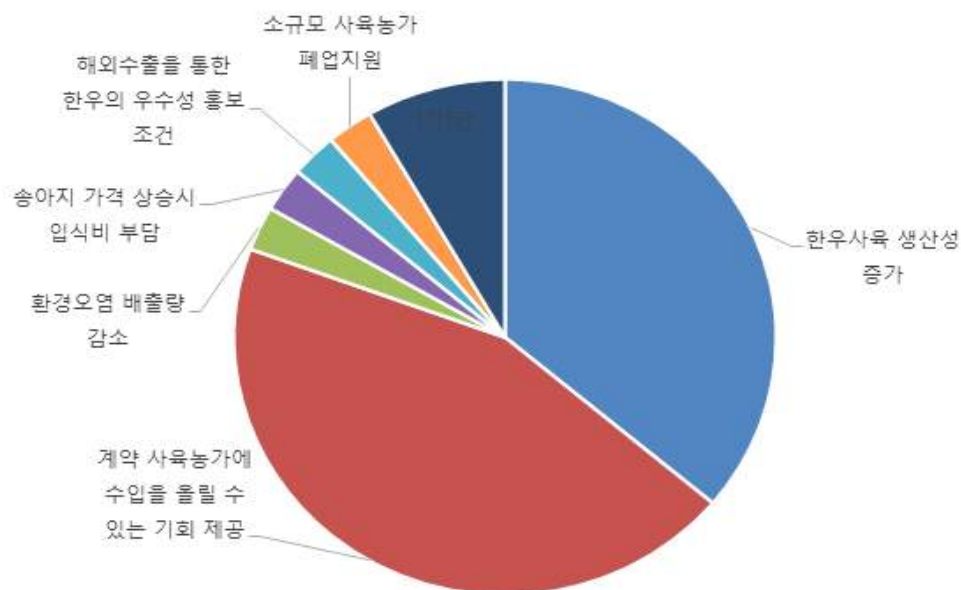


표 3-18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찬성 이유: 찬성인원(38) 기준

(단위 : 명)

응답	응답수	비율
한우사육 생산성 증가	13	34.2%
계약 사육농가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제공	16	42.1%
환경오염 배출량 감소	1	2.6%
송아지 가격 상승시 입식비 부담	1	2.6%
해외수출을 통한 한우의 우수성 홍보 조건	1	2.6%
소규모 사육농가 폐업지원	1	2.6%
기타	3	7.9%
응답없음	2	5.3%
계	38	100%

○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반대하는 이유

-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에 반대하는 인원 545명이 응답한 반대에 대한 이유로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인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378(6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 우려가 95(17.4%)로 조사됨.

그림 3-8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반대 이유: 반대인원(54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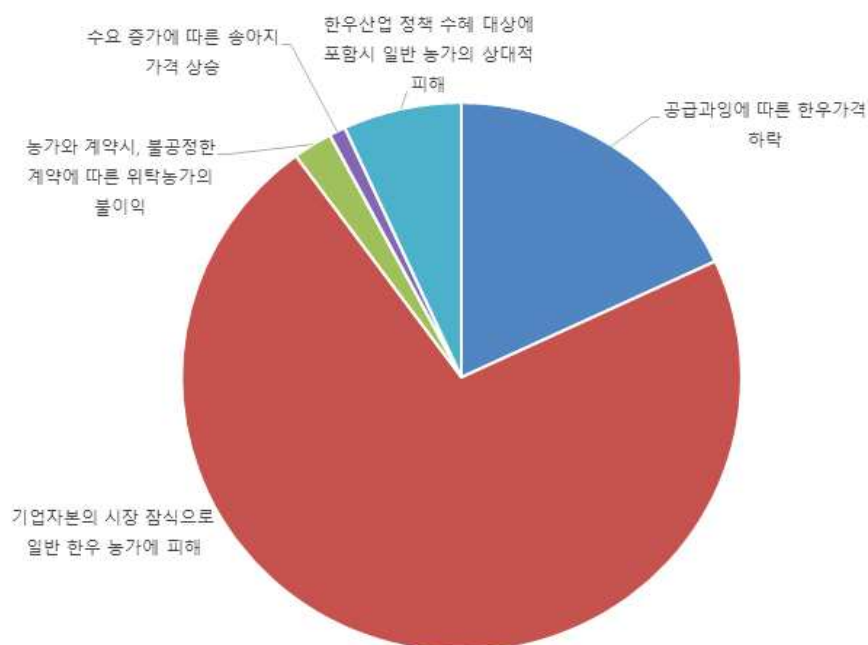


표 3-19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반대 이유: 반대인원(545) 기준

(단위 : 명)

응답	응답수	비율
기업자본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	378	69.4%
공급과잉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	95	17.4%
한우산업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	36	6.6%
농가와 계약시,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위탁농가의 불이익	12	2.2%
수요 증가에 따른 송아지 가격 상승	5	0.9%
기타	3	0.6%
응답없음	16	2.9%
계	545	100.0%

나.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한 의견

- 농·축협이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479(83.2%), 찬성이 97(16.8%)로 찬성 비율이 16.8%로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에 대한 찬성 비율 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농·축협이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농·축협의 비육우 사육에 대해 각 농가 특성별로 교차분석 결과, 위탁사육 농가는 농·축협의 비육우 사육에 찬성이 6(54.5%)인 반면,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찬성 91(16.1%)로 나타남.
- 위탁사육농들이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장 경영형태로 보면, 협동조합 소속 농가들의 찬성 비율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육규모별로는 20두 미만에서의 찬성 비율이 34.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9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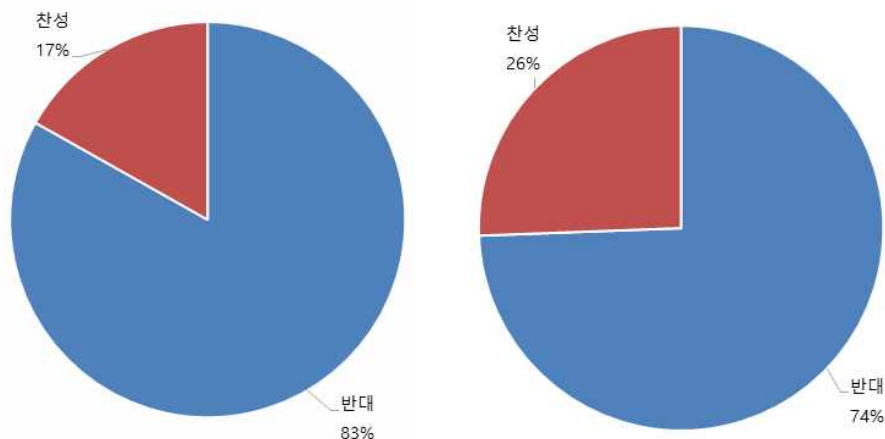


표 3-20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단위 : 명)

응답	가중치 조정 이전		가중치 조정 이후	
	응답수	비율	응답	비율
찬성	97	16.8%	찬성	25.6%
반대	479	83.2%	반대	74.4%
계	576	100.0%	계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35)은 제외하였음.

표 3-21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6(54.5%)	5(45.5%)	11(100%)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91(16.1%)	474(83.9%)	565(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35)은 제외하였음.

표 3-22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개인	91(16.3%)	467(83.7%)	558(100%)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1(16.7%)	5(83.3%)	6(100%)
협동조합	3(33.3%)	6(66.7%)	9(100%)
기타	2(66.7%)	1(33.3%)	3(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35)은 제외하였음.

표 3-23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지역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0(14.9%)	57(85.1%)	67(100%)
대전, 세종, 충청	14(22.2%)	49(77.8%)	63(100%)
부산, 대구, 울산, 경상	39(12.2%)	280(87.8%)	319(100%)
광주, 전라, 제주	34(27.0%)	92(73.0%)	126(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36)은 제외하였음.

표 3-24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20두 미만	14(34.1%)	27(65.9%)	41(100%)
20~49두	27(17.0%)	132(83.0%)	159(100%)
50~99두	23(12.0%)	169(88.0%)	192(100%)
100두 이상	33(17.9%)	151(82.1%)	184(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35)은 제외하였음.

표 3-25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농가자산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5억 미만	56(18.3%)	250(81.7%)	306(100%)
5~10억	18(10.8%)	148(89.2%)	166(100%)
10~20억	20(27.4%)	53(72.6%)	73(100%)
20억 이상	0(0.0%)	18(100%)	1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48)은 제외하였음.

다. 기업의 한우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농가의 의견

- 기업의 한우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농가의 반응으로는 찬성이 474(80.7%), 반대가 113(19.3%)로 대부분의 농가가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93.5%인 것에 비해, 직접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견해는 80.7%로 다소 낮아졌으며, 범주별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표를 참고 바람.

그림 3-10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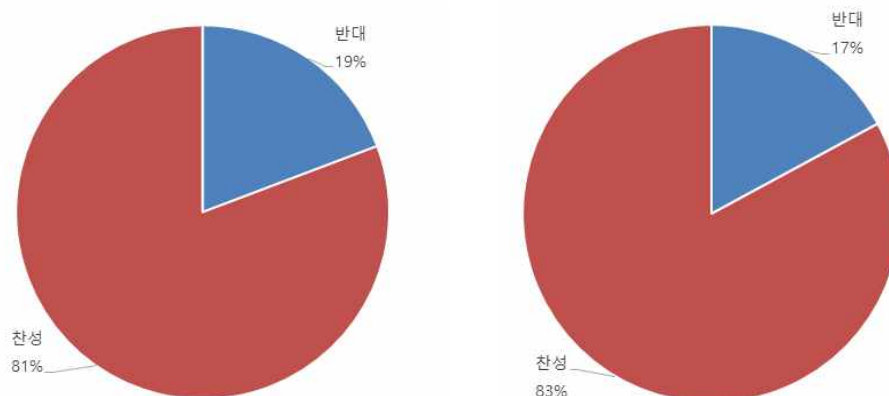


표 3-26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단위 : 명)

응답	가중치 조정 이전		가중치 조정 이후	
	응답수	비율	응답	비율
찬성	474	80.7%	찬성	82.9%
반대	113	19.3%	반대	17.1%
계	587	100.0%	계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4)은 제외하였음.

표 3-27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10(90.9%)	1(9.1%)	11(100%)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463(80.5%)	112(19.5%)	575(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표 3-28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 경영형태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개인	457(80.9%)	108(19.1%)	565(100%)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5(83.3%)	1(16.7%)	6(100%)
협동조합	8(72.7%)	3(27.3%)	11(100%)
기타	3(75.0%)	1(25.0%)	4(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표 3-29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57(83.8%)	11(16.2%)	68(100%)
대전, 세종, 충청	54(83.1%)	11(16.9%)	65(100%)
부산, 대구, 울산, 경상	257(79.3%)	67(20.7%)	324(100%)
광주, 전라, 제주	106(82.2%)	23(17.8%)	129(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표 3-30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20두 미만	35(83.3%)	7(16.7%)	42(100%)
20~49두	131(80.9%)	31(19.1%)	162(100%)
50~99두	158(81.4%)	36(18.6%)	194(100%)
100두 이상	149(79.3%)	39(20.7%)	18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5)은 제외하였음.

표 3-31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자산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5억 미만	246(79.4%)	64(20.6%)	310(100%)
5~10억	142(83.5%)	28(16.5%)	170(100%)
10~20억	62(83.8%)	12(16.2%)	74(100%)
20억 이상	14(77.8%)	4(22.2%)	1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39)은 제외하였음.

라. 기업자본을 통한 위탁사육

- 기업자본을 통한 위탁사육에 대해 농가들의 반응은 ‘반대’가 479(81.9%),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89(15.2%), ‘찬성’이 17(2.9%)로 기업자본을 통한 위탁사육도 대부분의 농가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찬성’과 ‘농가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비율이 18.1%로, 기업자본의 직접 진출에 대한 찬성 비율 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업의 직접 진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만, 위탁사육에 대해서는 반대의 정도가 조금 작아진 것으로 추정됨.
- 교차분석 결과, 협동조합의 경우 찬성이 2(18.2%), 반대가 7(63.6%), 농가의 선택이다 2(18.2%)로 가장 높은 비율로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을 찬성하였고,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고 비교적 큰 규모인 100두 이상 사육농가는 찬성이 3(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자산규모별로 보면, 5억원 미만이 찬성 비율이 3.2%로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남.

그림 3-11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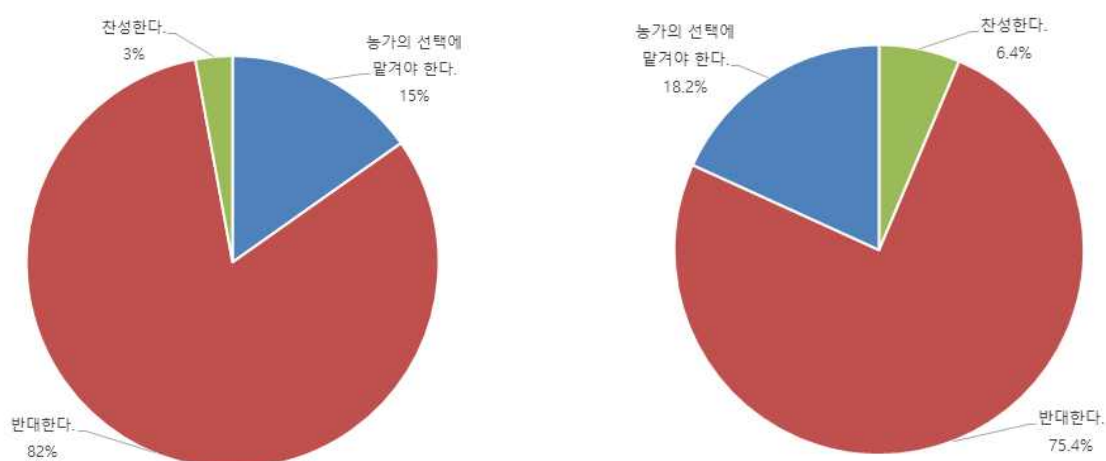


표 3-32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단위 : 명)

응답	가중치 조정 이전		가중치 조정 이후	
	응답수	비율	응답	비율
찬성한다.	17	2.9%	찬성한다.	6.4%
반대한다.	479	81.9%	반대한다.	75.4%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89	15.2%	농가 선택에 맡김	18.2%
계	585	100.0%	계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6)은 제외하였음.

표 3-33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농가의 선택	계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1(9.1%)	8(72.7%)	2(18.2%)	11(100%)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16(2.8%)	470(82%)	87(15.2%)	573(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34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농가의 선택	계
개인	15(2.7%)	462(82.1%)	86(15.3%)	563(100%)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0(0%)	5(83.3%)	1(16.7%)	6(100%)
협동조합	2(18.2%)	7(63.6%)	2(18.2%)	11(100%)
기타	0(0%)	4(100%)	0(0%)	4(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35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농가의 선택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5.9%)	54(79.4%)	10(14.7%)	68(100%)
대전, 세종, 충청	3(4.6%)	51(78.5%)	11(16.9%)	65(100%)
부산, 대구, 울산, 경상	8(2.5%)	263(81.2%)	53(16.4%)	324(100%)
광주, 전라, 제주	2(1.6%)	110(86.6%)	15(11.8%)	127(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36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농가의 선택	계
20두 미만	4(9.5%)	30(71.4%)	8(19.1%)	42(100%)
20~49두	4(2.5%)	121(74.7%)	37(22.8%)	162(100%)
50~99두	6(3.1%)	168(87.5%)	18(9.4%)	192(100%)
100두 이상	3(1.6%)	159(84.6%)	26(13.8%)	18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37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자산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농가의 선택	계
5억 미만	10(3.2%)	247(79.9%)	52(16.8%)	309(100%)
5~10억	4(2.4%)	149(88.2%)	16(9.5%)	169(100%)
10~20억	3(4.1%)	57(77%)	14(18.9%)	74(100%)
20억 이상	0(0%)	17(94.4%)	1(5.6%)	1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41)은 제외하였음.

마. 농축협의 위탁사육

-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반대가 418(68.4%), 조합과 조합원의 선택이다 120(20.5%), 찬성이 46(7.9%)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 의견이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비해서는 반대의 정도가 덜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교차분석 결과,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찬성이 4(36.4%)로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7.3%에 비해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음. 농장 경영형태 중에서는 협동조합 소속 농가의 찬성 비율이 27.3%로 다른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육규모를 보면,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찬성 비율이 21.4%로 다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2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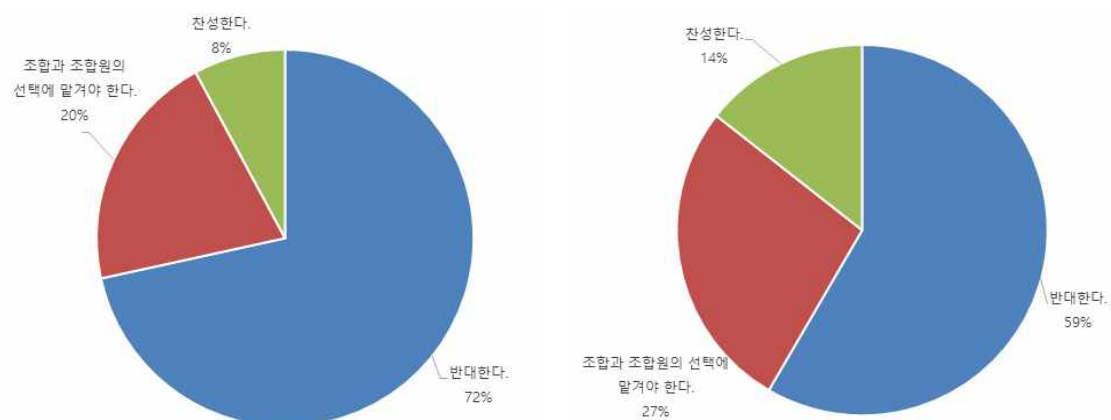


표 3-38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단위 : 명)

응답	가중치 조정 이전		가중치 조정 이후	
	응답수	비율	응답	비율
찬성한다.	46	7.9%	찬성한다.	14.4%
반대한다.	418	71.6%	반대한다.	58.4%
조합과 조합원의 선택	120	20.5%	조합과 조합원의 선택	27.2%
계	584	100.0%	계	10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39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조합, 조합원	계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4(36.4%)	4(36.4%)	3(27.3%)	11(100%)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42(7.3%)	414(72.3%)	117(20.4%)	573(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40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조합, 조합원	계
개인	42(7.5%)	407(72.3%)	114(20.2%)	563(100%)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0(0%)	5(83.3%)	1(16.7%)	6(100%)
협동조합	3(27.3%)	5(45.5%)	3(27.3%)	11(100%)
기타	1(25%)	1(25%)	2(50%)	4(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41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조합, 조합원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8(11.8%)	49(72.1%)	11(16.2%)	68(100%)
대전, 세종, 충청	6(9.5%)	43(68.3%)	14(22.2%)	63(100%)
부산, 대구, 울산, 경상	26(8%)	231(71.5%)	66(20.4%)	323(100%)
광주, 전라, 제주	6(4.7%)	94(72.9%)	29(22.5%)	129(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8)은 제외하였음.

표 3-42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조합, 조합원	계
20두 미만	9(21.4%)	20(47.6%)	13(31%)	42(100%)
20~49두	12(7.4%)	103(63.6%)	47(29%)	162(100%)
50~99두	9(4.6%)	153(78.9%)	32(16.5%)	194(100%)
100두 이상	16(8.6%)	142(76.3%)	28(15.1%)	186(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27)은 제외하였음.

표 3-43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가자산에 따라

(단위 : 명)

	찬성	반대	조합, 조합원	계
5억 미만	25(8.1%)	211(68.5%)	72(23.4%)	308(100%)
5~10억	13(7.6%)	130(76.5%)	27(15.9%)	170(100%)
10~20억	7(9.6%)	52(71.2%)	14(19.2%)	73(100%)
20억 이상	0(0%)	17(94.4%)	1(5.6%)	18(100%)

주: 전체 응답인원 611명 중 응답없음(42)은 제외하였음.

제2절 계량모형 분석 결과

1. 연구모형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의 소속, 사육규모, 자산 현황, 지역 등의 독립 변수가 기업 등의 한우사육업 진출에 대한 농가의 찬, 반 등의 의견 변화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계량 분석을 하였음.
-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총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음.
- ① CAP1: 기업자본이 한우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두 가지 응답)
- ② CAP2: 기업의 한우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의견(두 가지 응답)
- ③ COP1: 농·축협이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두 가지 응답)
- ④ CAP3: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의견(세 가지 응답: 찬, 반, 농가자율)
- ⑤ COP2: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의견(세 가지 응답: 찬, 반, 농가자율)
- 응답변수인 종속변수가 찬성과 반대, 두 가지로 이루어진 응답에 대해선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함(①, ②, ③). 응답변수인 종속변수가 세 가지 응답인 경우에는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함(④, ⑤).
- 각 모형은 해당 종속변수에 대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로 농가의 경영형태, 농장 소재 지역, 사육규모, 자산규모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해당 모형을 통해 추정함.

$$\text{종속변수} = f(\text{농가의 경영형태, 농장소재 지역, 사육규모, 자산규모})$$

가. 이항 선택 모형

- 이항 선택 모형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찬성(1)’, ‘반대(0)’과 같

은 이항 형태로 추정되는 경우 사용. 종속변수의 이항 선택성은 선형 회귀식의 기본 가정인 오차항의 정규분포와 동분산성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 따라서 이항 로짓 모형은 선형회귀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정함.

$$(식 1) \quad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단, ε 는 $E(\varepsilon) = 0$ 인 대칭(Symmetric) 분포이며,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varepsilon)$

- y^* 는 관찰 불가능한(Unobservable) 응답 변수(Response Variable)로 흔히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불림. y^* 가 어떠한 수준 이상에서 이항 선택항 범주인 사건 A가 일어나며, 이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상정하여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고 그 표현은 다음과 같음.

$$(식 2) \quad y = \begin{cases} 1 & \text{if } y^*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음.

$$\begin{aligned} (식 3) \quad Prob(y=1) &= Prob\left(\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 0\right) \\ &= Prob\left(\varepsilon > -\sum_{k=1}^K \beta_k x_k\right) \\ &= 1 - F\left(-\sum_{k=1}^K \beta_k x_k\right) \quad (\text{대칭분포함수의 CDF로부터}) \\ &= F\left(\sum_{k=1}^K \beta_k x_k\right) \end{aligned}$$

- 여기서 $Prob[\cdot]$ 는 확률함수, x_k 는 종속변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이며, β 는 계수벡터, $F(\cdot)$ 는 누적밀도함수임. (식 3)으로부터 이항 선택의 확률이 곧 오차항 ε 의 CDF 함수인 $F(\varepsilon)$ 로 정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항 선택성을 가진 불연속적 변수가 종속변수로 쓰일 때는 일반

선형회귀식에서 다룰 수 없었던 부분이 확률을 도입함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오차항에 대한 누적분포함수 $F(\cdot)$ 는 누적로지스틱분포(로짓모형) 혹은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프로빗 모형)로 가정됨. 두 분포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단지 꼬리부분에서 로지스틱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두터운 형태를 취하는 차이가 있음. 프로빗 모형보다 로짓모형의 계산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응용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이 주로 채택됨.

나. 다항 로짓 모형

- 이항(Binomial)선택의 경우 응답변수가 이항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본 모형이 도출됐지만, 다항로짓모형의 경우에는 응답변수가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어, 이항선택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다항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종속변수가 서열이나 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 개 이상의 범주를 포함할 때 적용하는 모형이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으로 다항로짓은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가운데 하나의 범주를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함.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해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특정 범주 j 에 속할 확률을 $P(Y=j)$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됨.

$$(식 4) \quad P(Y=j) = \frac{e^{\sum_{k=1}^K \beta_k x_k}}{1 + \sum_{j=1}^{J-1} e^{\sum_{k=1}^K \beta_k x_k}}, \quad j = 1, 2, \dots, J$$

- 또한, 기준범주가 J 라고 했을 때 J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식 5) P(Y=J) = \frac{1}{1 + \sum_{j=1}^{J-1} e^{\sum_{k=1}^K \beta_k x_k}}$$

- 식 (4)와 식 (5)의 분모가 같으므로, 기준범주 J 집단에 비해 j집단이 선택될 확률은 $P(Y=j)/P(Y=J) = e^{\sum_{k=1}^K \beta_k x_k}$ 처럼 표시된다.
- 이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오즈비율(log odds ratio)을 얻게 됨.

$$(식 6) \log \left[\frac{P(Y=j)}{P(Y=J)} \right] = \sum_{k=1}^K \beta_k x_k$$

2. 분석결과

-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에 대한 찬·반 의견, 농·축협이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기업자본과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의견까지 총 다섯 가지를 종속변수로 두고, 농가의 반응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농장의 위탁사육 여부, 경영형태, 지역, 사육규모, 자산을 설명변수로 포함함.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 3-44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유형	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CAP1)	반대(=0) 찬성(=1)	0.06	0.24	0	1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COP1)	반대(=0) 찬성(=1)	0.16	0.37	0	1
기업의 한우사육 “제한” (CAP2)	반대(=0) 찬성(=1)	0.82	0.39	0	1
기업자본의 위탁사육 (CAP3)	찬성(=1) 농가의 선택(=2) 반대(=3)	2.80	0.45	1	3
농·축협의 위탁사육 (COP2)	찬성(=1) 조합과 조합원의 선택(=2) 반대(=3)	2.65	0.61	1	3

표 3-45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유형		설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위탁사육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0)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1)	0.02	0.13	0	1
경영형태	개인 (DM1)	그 외 경영형태(=0) 개인(=1)	0.97	0.18	0	1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DM2)	그 외 경영형태(=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1)	0.02	0.14	0	1
	협동조합 (DM3)	그 외 경영형태(=0) 협동조합(=1)	0.01	0.08	0	1
	기타 (DM4)	그 외 경영형태(=0) 기타(=1)	0.01	0.08	0	1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DR1)	그 외 지역(=0) 서울, 인천, 경기, 강원(=1)	0.11	0.32	0	1
	대전, 세종, 충청 (DR2)	그 외 지역(=0) 대전, 세종, 충청(=1)	0.11	0.32	0	1
	광주, 전라, 제주 (DR3)	그 외 지역(=0) 광주, 전라, 제주(=1)	0.22	0.41	0	1
	부산, 울산, 대구, 경상 (DR4)	그 외 지역(=0) 부산, 울산, 대구, 경상(=1)	0.55	0.50	0	1
사육규모	20두 미만 (DS1)	그 외 사육규모(=0) 20두 미만(=1)	0.07	0.26	0	1
	20~49두 (DS2)	그 외 사육규모(=0) 20~49두(=1)	0.28	0.45	0	1
	50~99두 (DS3)	그 외 사육규모(=0) 50~99두(=1)	0.33	0.47	0	1
	100두 이상 (DS4)	그 외 사육규모(=0) 100두 이상(=1)	0.32	0.47	0	1
자산	5억 미만 (DA1)	그 외 자산(=0) 5억 미만(=1)	0.54	0.50	0	1
	5억~10억 (DA2)	그 외 자산(=0) 5억~10억(=1)	0.29	0.46	0	1
	10~20억 (DA3)	그 외 자산(=0) 10억~20억(=1)	0.13	0.34	0	1
	20억 이상 (DA4)	그 외 자산(=0) 20억 이상(=1)	0.03	0.18	0	1

가.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

- 먼저, “기업자본이 한우 사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농가들의 찬·반”(CAP1; 반대 0, 찬성 1) 응답을 종속변수로 한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46 CAP1 로짓모형 추정 결과

변수	변수설명	Estimate	Std. Error	dF/dx	Std. Error
위탁사육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음.	0.497	1.106	0.018	0.556
경영형태 (DM) 기준 : 기타 경영	개인	15.167	2203.510	0.047	2.955
	농업회사법인	16.116	2203.511	0.979	1.378
	협동조합	1.429	3075.990	0.082	304.045
지역 (DR) 기준: 부산, 울산, 대구, 경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187	0.657	-0.005	0.159
	대전, 세종, 충청	0.733	0.484	0.028	0.857
	광주, 전라, 제주	-0.053	0.479	-0.002	0.049
사육규모 (DS) 기준: 100두 이상	20두 미만	0.171	0.698	0.005	0.166
	20두~49두	0.106	0.522	0.003	0.099
	50두~99두	-0.593	0.546	-0.016	0.495
자산 (DA) 기준: 20억 이상	5억 미만	14.920	920.878	0.966	12.922
	5~10억	14.033	920.878	0.998	1.189
	10~20억	14.784	920.878	0.996	0.723
상수항		-32.590	2388.195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로짓모형 추정 결과, 모든 설명변수의 추정치와 한계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위탁사육 여부, 경영형태, 농장 소재 지역, 사육규모, 자산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추정됨.
-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으나, 경영형태 중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소속 농가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지역 농가가, 사육규모로는 2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자산규모로는 5억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찬성확률이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참고로 표에 특정 설명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찬성확률의 한계효과를 계측하여 제시했으나 모두 통계학적 의미는 없음.

나.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 다음으로 농·축협이 생축장에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농가들의 찬반 의견에 대해 살펴보자. 농·축협이 생축장에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COP1)을 종속변수(반대 0, 찬성1)로 한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추정 결과,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일수록 그리고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일수록(기준그룹: 100두 이상) 농축협의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반면, 개인 농가(기준그룹: 기타경영)일수록 농축협의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로는 경상권보다 호남권에서 찬성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3-47 COP1 로짓 모형 추정 결과

변수	변수설명	Estimate	Std. Error	dF/dx	Std. Error
위탁사육 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음.	1.548**	0.700	0.222	4.038
경영형태 (DM) 기준 : 기타 경영	개인	-2.119*	1.239	-0.349	5.071
	농업회사법인	-1.207	1.403	-0.062	1.642
	협동조합	-17.394	2057.136	-0.097	2.455
지역 (DR) 기준: 부산, 울산, 대구, 경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114	0.425	0.010	0.238
	대전, 세종, 충청	0.708*	0.370	0.072	1.658
	광주, 전라, 제주	1.024***	0.286	0.106	2.390
사육규모 (DS) 기준: 100두 이상	20두 미만	1.043**	0.466	0.122	2.607
	20두~49두	-0.067	0.362	-0.005	0.137
	50두~99두	-0.305	0.336	-0.024	0.594
자산 (DA) 기준: 20억 이상	5억 미만	16.059	875.303	0.993	2.457
	5~10억	15.563	875.303	0.999**	0.388
	10~20억	16.534	875.303	0.989	1.599
상수항		-15.913	875.304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다음으로 COP1의 로짓모형에 대해 Odds Ratio을 구하면,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찬성할 확률이

4.7배 큰 것으로 나타남. 사육규모별로는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가 100두 이상 규모에 비해 찬성할 확률이 2.8배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상권보다 충청권의 찬성확률이 2.0배, 전라권의 찬성확률이 2.8배 크게 나타남. 경영 형태별로는 기타경영 형태보다 개인이 찬성확률이 78%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8 COP1 Odds Ratio

변수	위탁사육 여부	경영형태	지역		사육규모
변수설명	위탁사육하고 있음.	개인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	20두 미만
$\exp(\hat{\beta})$	4.702	0.120	2.030	2.784	2.838

다.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 제한

- 다음은 기업의 한우 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농가의 의견 (CAP2; 반대 0, 찬성 1)을 종속변수로 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임.

표 3-49 CAP2 로짓 모형 추정결과

변수	변수설명	Estimate	Std. Error	dF/dx	Std. Error
위탁사육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음.	0.869	1.068	0.095	0.205
경영형태 (DM) 기준 : 기타 경영	개인	-13.078	509.419	-0.244	2.471
	농업회사법인	-13.561	509.419	-0.861	1.602
	협동조합	-13.992	509.420	-0.834	0.743
지역 (DR) 기준: 부산,울산, 대구,경상	서울,인천,경기,강원	0.319	0.370	0.043	0.090
	대전, 세종, 충청	0.256	0.378	0.035	0.079
	광주, 전라, 제주	0.134	0.276	0.019	0.051
사육규모 (DS) 기준: 100두 이상	20두 미만	0.571	0.490	0.070	0.142
	20두~49두	0.390	0.316	0.053	0.104
	50두~99두	0.327	0.283	0.046	0.090
자산 (DA) 기준: 20억 이상	5억 미만	-0.185	0.627	-0.027	0.101
	5~10억	0.233	0.625	0.033	0.103
	10~20억	0.307	0.665	0.041	0.112
상수항		14.189	509.419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추정 결과, 모든 설명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한우 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위탁사육 여부, 경영형태, 농장 소재 지역, 사육규모, 자산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제한에 찬성하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추정됨.

라. 기업자본의 한우 위탁사육

- 다음으로 기업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반응(CAP3: 찬성 1, 농가의 자율 선택 2, 반대 3)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앞의 단순 빈도분석을 보면, 기업자본을 통한 위탁사육에 대해 농가들의 반응은 “반대”가 479(78.4%),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89(14.6%), “찬성”이 17(2.8%)로 기업자본을 통한 위탁사육도 대부분의 농가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항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반대(3)를 기준범주로 놓고 찬성(1)과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2)는 응답이 선택될 확률을 추정함. 먼저, 찬성(1)을 선택할 확률의 추정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만을 뽑아서 보면, 개인 농가(기준그룹)에 비해 농업회사법인 소속 농가의 기업의 위탁사육에 대한 찬성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반적으로 위탁사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소속 농가의 부정적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육규모 별로는 20두 미만 소규모(기준그룹) 농가보다 50두 이상 규모 농가들의 찬성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규모 농가보다 50두 이상 규모 농가의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욱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가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낮게 추정됨.
- 다음으로,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2)을 선택할 확률의 추정 결과를 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 협동조합 소속 농가, 20~49두 규모 농가에서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추정됨.

표 3-50 CAP3(기업자본의 위탁사육) 다항 로짓모형 추정결과

CAP3: 응답 1 찬성 (기준그룹: 응답 반대 3)					
변수	변수설명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위탁사육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음.	1.356	1.206	1.125	0.261
경영형태 (DM) 기준 : 개인	농업회사법인	1.588	0.883	1.799	0.079*
	협동조합	-13.022	2044.144	NA	NA
	기타	-14.587	2964.277	NA	NA
지역 (DR) 기준: 부산,울산, 대구,경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737	0.670	1.099	0.272
	대전, 세종, 충청	0.605	0.721	0.840	0.401
	광주, 전라, 제주	-0.670	0.853	-0.786	0.432
사육규모 (DS) 기준: 20두 미만	20~49두	-1.173	0.776	-1.511	0.131
	50두~99두	-1.297	0.765	-1.694	0.09*
	100두 이상	-2.165	0.964	-2.245	0.025**
자산 (DA) 기준: 5억 미만	5~10억	0.042	0.677	0.062	0.950
	10~20억	1.134	0.819	1.385	0.166
	20억 이상	-13.683	1115.253	NA	NA
상수항		-2.387	0.604	-3.949	7.86e-05***
CAP3: 응답 2 농가자율선택 (기준그룹: 응답 반대 3)					
변수	변수설명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위탁사육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음.	0.590	0.840	0.703	0.482
경영형태 (DM) 기준 : 개인	농업회사법인	-0.636	1.071	-0.594	0.553
	협동조합	1.657	1.331	1.245	0.213
	기타	-16.686	2905.419	NA	NA
지역 (DR) 기준: 부산,울산, 대구,경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063	0.413	-0.154	0.878
	대전, 세종, 충청	0.184	0.380	0.485	0.628
	광주, 전라, 제주	-0.431	0.332	-1.297	0.195
사육규모 (DS) 기준: 20두 미만	20~49두	0.319	0.470	0.679	0.497
	50두~99두	-0.694	0.506	-1.372	0.170
	100두 이상	-0.227	0.525	-0.433	0.665
자산 (DA) 기준: 5억 미만	5~10억	-0.483	0.334	-1.444	0.149
	10~20억	0.398	0.396	1.004	0.315
	20억 이상	-1.321	1.107	-1.193	0.233
상수항		-1.413	0.429	-3.295	0.001***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다음으로 설명변수들 중 다른 조건이 같고 하나의 설명변수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Odds Ratio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해봄. CAP3:1의 추정 결

과에서 유의한 설명변수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준범주인 개인에 비해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찬성확률이 4.9배 큰 것으로 계측됨. 사육규모의 경우 모두 1보다 작은 값이 계측되어 기준범주인 20두 미만의 농가와 비교했을 때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찬성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함. 50~99두와 100두 이상 사육규모 농가의 위탁사육에 찬성할 확률이 기준범주인 20두 미만 농가보다 각각 72.7%, 8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1 CAP3: 1(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해 찬성할 확률) Odds Ratio

변수	경영형태	사육규모	
변수설명	농업회사법인	50~99두	100두 이상
$\exp(\hat{\beta})$	4.894	0.273	0.115

마. 농·축협의 위탁사육

-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의견(COP2)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그룹을 “반대”(3)를 선택한 그룹으로 한 경우, “찬성”(1)을 선택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위주로 보면,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일수록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육규모 중 기준그룹인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보다 그 이상의 규모 농가들이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 찬성하는 확률이 작게 나타남. 즉,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이 다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들은 통계학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기준그룹을 “반대”(3)를 선택한 그룹으로 한 경우, “농가의 선택에 맡긴다”(2)를 선택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위주로 보면, 사육규모가 20두 미만인 농가와 비교하였을 때, 사육규모가 50두~99두와 100두 이상의 농가들이 농·축협의 위탁사육을 “농가의 선택에 맡긴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즉, 상대적으로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가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2 COP2 다항 로짓모형 추정결과

COP2: 응답 1 찬성(기준그룹: 응답 3 반대)					
변수	변수설명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위탁사육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음.	2.813	0.852	3.303	0.001***
경영형태 (DM) 기준 : 개인	농업회사법인	1.104	0.754	1.465	0.143
	협동조합	-14.072	1981.698	NA	NA
	기타	2.396	1.468	1.633	0.103
지역 (DR) 기준: 부산,울산, 대구,경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323	0.477	0.677	0.499
	대전, 세종, 충청	0.090	0.513	0.174	0.862
	부산, 울산, 대구, 경상	-0.842	0.528	-1.594	0.111
사육규모 (DS) 기준: 20두 미만	20~49두	-1.178	0.526	-2.242	0.025**
	50두~99두	-2.047	0.576	-3.551	0.000***
	100두 이상	-1.512	0.588	-2.572	0.010**
자산 (DA) 기준: 5억 미만	5~10억	0.245	0.421	0.582	0.561
	10~20억	0.425	0.561	0.758	0.448
	20억 이상	-15.562	1088.719	NA	NA
상수항		-0.969	0.431	-2.246	0.025**
COP2: 응답 2 농가의 선택에 맞긴다(기준그룹: 응답 3 반대)					
변수	변수설명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위탁사육여부 (DENT)	위탁사육을 하고 있음.	1.274	0.816	1.560	0.119
경영형태 (DM) 기준 : 개인	농업회사법인	-0.201	0.827	-0.243	0.808
	협동조합	1.132	1.336	0.847	0.397
	기타	1.305	1.443	0.905	0.366
지역 (DR) 기준: 부산,울산, 대구,경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07	0.390	-0.531	0.595
	대전, 세종, 충청	0.064	0.358	0.179	0.858
	부산, 울산, 대구, 경상	0.094	0.269	0.351	0.726
사육규모 (DS) 기준: 20두 미만	20~49두	-0.355	0.414	-0.858	0.391
	50두~99두	-1.044	0.430	-2.430	0.015**
	100두 이상	-1.048	0.467	-2.244	0.025***
자산 (DA) 기준: 5억 미만	5~10억	-0.188	0.278	-0.676	0.499
	10~20억	0.100	0.379	0.263	0.792
	20억 이상	-1.511	1.082	-1.397	0.162
상수항		-13.898	1088.72	NA	NA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 COP2의 Odds Ratio의 추정 결과를 보면 위탁사육 농가는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 “반대”에 보다 “찬성”할 확률이 16.7배 큰 것으로 추정됨. 다음으로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보다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20~49두 규모에서 69.2%, 50~99두 규모에서 87.1%, 100두 이상 규모에서 68.4% 각각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농축협이 위탁사육에 대해 “반대”보다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를 선택할 확률이 50~99두 규모에서 64.8%, 100두 이상 규모에서 64.9% 각각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표 3-53 COP2(농·축협의 위탁사육) Odds Ratio

변수	COP2:1				COP2:2	
	위탁사육여부	사육규모			사육규모	
변수 설명	위탁사육하고 있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50~99두	100두 이상
$\exp(\hat{\beta})$	16.660	0.308	0.129	0.316	0.352	0.351

제3절 조사결과와 함축적 의미

1.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및 제한에 대한 농가 의견

- 기업자본이 한우 사육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가의 반대가 90.3%(찬성 9.7%)로 매우 높게 나타남. 위탁사육에 대해서는 “찬성” 및 “농가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24.6%로(찬성 6.4%, 농가선택자율 18.2%), 기업의 한우 사육 직접 진출보다는 반대 의견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남.
- 농가 유형별로는,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와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가 기업자본에 대한 반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 찬성하는 농가들의 경우, 비육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경영 불안감으로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반감이 다른 농가들에 비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농가 경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반감은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그만큼 기업의 한우 사육 진출이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2.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 및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 의견

-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해 응답자의 74.4%가 반대(찬성 25.6%)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기업자본의 진출에 비해서는 반대 비율이 낮게 나타남. 농축협의 위탁사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반대”했고, 나머지 “찬성” 및 “농가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1.6%로(찬성 14.4%, 농가선택자율 27.2%) 나타남. 과반은 아니지만 많은 농가가 농축협의 위탁사육과 관련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 유형별로는,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 협동조합 소속 농가의 경우,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축협의 경우, 비육우 사업을 통해 일반농가와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많은 일반농가가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동시에, 농가가 조합원으로서 받는 혜택도 결부되어 있어 기업보다는 반감이 덜한 상황임.
- 향후, 일반농가와 경쟁 구도를 지양하면서 공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 농가에 최대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4장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

- 설문조사 결과 기업이나 농축협이 한우 사육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매우 높게 나타남. 자산규모, 지역, 경영형태, 사육규모에 따라 찬반의 비율이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위탁사육을 하는 농가도 반대 의견이 높았음. 다만, 일부 농가에서 위탁사육에 대해 대부분이 반대는 하고 있으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한우 농가들은 농가 중심의 사육생태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도 8:2로 대다수가 찬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 중심의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육업 진출을 억제하고, 전업농과 중소가족농은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규제에는 저항이 따르는 만큼 농가는 지원하고, 기업은 시장에 맡기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규제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과 건전한 사육 주체 육성을 위한 한우 농가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1절 기업의 한우 사육 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⁶⁾

-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업 진출 초기에는 기업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산업조직론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야 한다고 정의하고, 10~15%의 시장을 가졌을 때 독점력이 생기기 시작해 30%를 넘게 되면 ‘의미 있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⁷⁾.
- 현재 기업자본에 의한 한우 사육 규모는 크지는 않으나, 향후 대규모 기업자본의 사육부문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의 독과점화를 촉진해 이익 대부분이 소수의 대규모 축산기업에 귀속되고 소비자와 사육농가의 후생을 포함한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송아지가격 및 한우 도매가격 하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배합사료 가격은 20%, 조사료 가격은 50% 가까이 폭등하면서 수익률 악화를 걱정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위탁사육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함.⁸⁾
- 2017년 대비 2021년 비농업인의 한우사육 증가율은 85%로 앞으로 향후 3~5년간 지속될 한우가격 조정기 기업의 사육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경기 안성에서 개최된 실태조사에 협조한 지역축협 관계자, 농협계통사료 영업담당자 등에 따르면, 한우 가격 하락이 전망되면서 자본력이 약한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위탁사육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실제 최근 2~3년간 신규로 지어진 한우농장의 경우 200두 이상 대규모 시설이 대부분이나 송아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송아지를 제대로 입식시키지 못한 곳이 많았고, 이들 농장을 상대로 위탁사육 제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6) 하광옥(2017)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연구. (61~67p).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7) 박종국(2012) 산업조직론. 법문사 (264p)

8) 올해만 사료값 20% 인상..한우협회 사료 안정기금 조성 필요해. 농업경제신문. 2021.7.27. <https://www.thekpm.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06>

- 100두 이상 규모의 신규축사, 축사 증축을 통해 사육 규모를 늘린 일부 농가들의 경우, 최근 배합사료와 조사료가격 폭등 그리고 최근 한우 가격 내림세 등을 감안할 때 가격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사육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이번 한우 가격 조정기가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사됨.
-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약화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오세익(2001)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크게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업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고 기능으로 보았으며 가상가치평가법과 대체법으로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추정하였음. 추정 결과, 식량안보 기능의 가치는 1조 7084억 원, 농업경관 제공 기능은 1조 1214억 원, 농촌활력 제고는 8165억 원으로 추정함. 대체법으로 평가한 환경보전 기능은 6조 4210억 원으로 추정돼 합산한 다원적 기능의 가치는 10조 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태호(2016)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 생산물 중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쌀,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과 같은 식량 그리고 면화, 비단, 양모, 가죽 등의 의류용 소재)이 아닌 비상품재(식량안보, 농촌 지역사회 유지, 경관 및 전통문화, 농촌환경 등)를 말하며, 이들 비상품재는 농축산물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특징이 있다고 봄. 기업의 농축산물 생산은 농민대신 수행할 수 있으나 다원적 기능은 약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행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임.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부분은 농가들이 농업생산현장인 농촌에 거주하며 농산물과 함께 생산해 내는 것인데, 기업자본이 주도하는 축산업은 외부 투입재와 노동자, 자동화 시설에 의존해 가축을 생산하는 ‘공장형 축산’이 되기 때문임.

제2절 기업자본에 대한 규제 사례 검토

1. 해외 사례

가. 미국 사례

- 미국농무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열화사업참여 농가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Packers and Stockyard Act(PSA)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조직으로 미국 농무부 차관 밑에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GIPS)’라는 행정기관을 두고 있음.⁹⁾
- GIPS는 연방곡물검사국(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과 패커 및 도축청(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이 합병해 설립됨. 주요 임무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축산패커로부터 사육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PSA법에 따라 패커의 기만적 행위, 차별적 행위에 소송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는 미국산업의 75% 이상을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며 자사 이익을 크게 늘리고 있어 농민을 비롯한 소비자, 노동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임.¹⁰⁾
- 이 행정명령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 축산농민과 패커 간 불평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ackers and Stockyard Act를 개정하고, 패커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패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임. 잘못된 관행에 저항하는 농민에 대한 패커의 보복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담길 예정임.¹¹⁾

9)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packers-and-stockyards-act>

10) 장영신·강상구(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11) Biden seeks to lift limits on farmer deals with meat processors, tractor. REUTERS. 2021. 7.7.

<https://www.reuters.com/world/us/exclusive-biden-sides-with-farmers-over-right-repair-tractor-software-battle-2021-07-06/>

나. 일본 사례

- 일본은 축산농민이 축산물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가격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0년 일본 제도를 모방하여 송아지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비육우뿐만 아니라, 비육돈, 번식우, 육계와 계란까지 가격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가격 안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목표로 했던 가격보다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 프로그램 대상에 기업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을 제외함으로써 전업농과 중소가족농을 보호하고 있음.

표 4-1 일본 축산농가를 위한 경영지원제도

대상	명 칭	주요 내용
낙농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	가공원료유생산지역(북해도)의 원유 재생산을 목적으로, 가공원료유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	가공원료유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가와 생산자가 적립한 기금에서 일정부분 보전
송아지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	송아지 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함으로써, 송아지생산 안정을 도모
비육우	육용우비육경영안정교부금제도	비육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 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
양돈	육돈경영안정교부금제도	판매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할을 지원함으로써, 양돈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계란	계란생산자경영안정대책	계란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계란생산 및 가격안정을 도모

자료 : 김한중(2021)

2. 타산업 사례

가.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법은 UR 협상이 진행된 1990년대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면서 외국계 대형소매유통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이 결정되자, 이에 대응해 국내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됨.
- 이 법률 제정 이후 대규모 할인점과 체인형슈퍼마켓 사업에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10여년 만에 국내 유통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2010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진흥법에서 규제법으로 전환됨.¹²⁾
- 대규모 점포의 규제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대규모 점포, 그리고 전통 상업 보존구역에 들어서는 준대규모점포는 개설 전에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상인협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 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실제 집행 여부를 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3에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의 예고를 의무화함.
-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토록 하였음.
-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익과 지역 상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지역

12)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강력 반발. 한국일보. 2012.11.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211201788070682>

상권 보호에 더 큰 무게 중심을 두고 규제가 마련되고 있음.

나. 방송법과 보험법

- 방송법과 보험법은 각 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음.
- 방송법은 방송의 기획, 제작,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을 명시하고 있음.
- 방송법 제58조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조항에는 지상파방송은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하며, 종합편성채널은 매 반기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 방통위 고시 비율 이상을 편성토록 하였음.
- 보험법에서는 은행이라는 판매창구를 가지지 못한 전업 보험회사를 위해 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보험법 제 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는 보험상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설계사를 2명까지만 두도록 하고 있으며, 매 사업 연도별로 은행은 특정 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량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하게 되며, 일정 기간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

지게 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만료하게 됨.

-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관련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단순히 대기업의 진입을 영구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확장을 억제하고 그 기간 해당 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함께 기울일 기회를 갖는 데 있음.

제3절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처 방안

1.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 김한중(2021)은 기업의 사육업 진출 규제 방안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기업에 경제적·사회적 책임, 축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생태·환경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을 주장함.
- 하광옥(2017)도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사육업 진출이 초기인 만큼 직접 규제의 명분이 약한 것을 고려해 한우농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 농가 중심의 사육생태계를 만들고, 이후 기업의 사육 비중이 높아지면 기업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이후에도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하면, 조세 감면혜택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 연구에서는 2017년 조사 대비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은 85%로 2017년 대비 2021년 전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인 27%의 3배 이상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기업의 경제적 책임 부과를 위해, 기업에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 가격이 하락하면 농가는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량을 줄이며 가격을 안정시키려 함. 하지만, 기업은 규모의 경제 등을 위해 사육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사육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가격 변동기 기업의 독점력이 계속 강화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자제시키고, 가격 하락기 수급조절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농가들의 가격 안정 노력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¹³⁾
 - 2022년 현재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사업으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일반농가와 마찬가지로 수급조절을 위해 기업형 사육 주체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미경산우비육과 경산우비육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13) 한국농업신문. 2016. 10.31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0>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기업이 사육업에 진입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의 출점 제한 조치와 같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환경 등 축산업 영향평가서와 축산농가들과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 및 경제적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생태·환경적 책임 강화

- 기업이 농업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 기준(사육밀도, 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을 상향하고, 지역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생태·환경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함.
- 예를 들어 <표 4-2>처럼, 사육 밀도의 적용에 있어 기업에 생태환경적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임. 예에서는 가축에게 제공하는 면적을 농가보다 150% 더 넓게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표 4-2 한육우 농가와 기업축산농장 가축사육시설 면적 예시

(단위: m²)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농가	기업	농가	기업	농가	기업
방사식	10.0	15	7.0	10.5	2.5	3.75
계류식	5.0	7.5	5.0	7.5	2.5	3.75

주1) 농가 사육밀도는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 나온 기준 적용

주2) 기업 사육면적은 농가 사육면적에 150%를 곱해 산출

- 이외에도 부숙 촉진과 분뇨 보관 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교반기 설치 의무화, 분뇨 보관 과정 배출되는 암모니아 등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탈취시설 의무적용 등 기업의 축산업 허가기준을 농가보다 더 상향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가축분뇨 교반기



그림 4-2 가축분뇨 탈취탑

- 기업은 일반 농가에 비해 인적, 물적 인프라가 풍부하고, 신기술의 적용 등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양축농가와 협력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 인프라의 건설 및 공동이용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직접 규제 강화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한우 사육이 계속 증가해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조세특례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사료 등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외, 면세유 제공 제한 등 당초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에서 기업을 배제하는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조세제도는 소득수준이 낮고 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기업이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농업인들 사이에서의 일반적 의견임.
- 조세특례법에 따른 혜택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업경영체 관련법에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앞서 필요하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에 대한 혜택 제외를 명기할 수 있음.
- 과세 당국의 경우 복지재정의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저항이 큰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더 선호함. 기업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에 대한 면세와 감세 요청도 대

처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음.¹⁴⁾

- 기업의 한우 사육업 확대로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때 축산업 제27조와 같이 기업의 한우 사육업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실제로 현재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법과 방송법에서는 수직계열화가 가능한 방송사와 은행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 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해 편성하거나 은행에서의 특정 업체 보험상품만을 독점해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이를 응용해 기업의 생산가능량을 쿼터(비율)로 규제하거나, 확장을 억제하거나 철수를 종용할 수 있는 적합업종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4-3 보험법과 방송법에서의 수직계열화 규제 방안

	보험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규제조항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내 용	1개 보험회사(생명,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 시간의 100분의 15 이내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14) 김유찬. (2012). 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규제연구, 21(2), 79-125.

표 4-4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입 제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피해 정도	기업 진입초기		일부 피해 발생
규제 내용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기업의 사육업 (농장개설 또는 위탁사육을 농장과 계약, 전속거래농가 계약시) 진입시 예고제 도입	사육업 진입시 축산업 영향평가서, 기존농가와 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 수급조절 등 경제적 책임 부여
응용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구분	4단계		5단계
피해 정도	농가와 경합 시작		농가 피해 상당한 수준
규제 내용	계열화 사업자는 필요한 종축, 배합사료, 가축, 도체육, 부분육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강제, 농업인에게 제공했던 조세감면 혜택 기업축산은 제외		축산 사육업의 중소기업 및 농업인 적합업종 도입
응용 법률	방송법, 보험법, 조세특례 대상 제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 하광옥(2017)

제4절 건전한 한우 사육 주체 육성 방안

- 건전한 사육 주체 육성은 기업의 축산업 진입을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과 함께 중소농가와 전업농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은 규제 당사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실패 가능성도 크지만,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 강화는 기업을 규제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한우농가들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그리고 제도를 실행에 옮길 방안 마련이 필요함.

1. 가격안정제 확대

- 현재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는 방편으로 송아지안정제가 도입되었으나 한우 사육구조가 바뀌면서 안정제 프로그램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가. 송아지안정제 개편

- 송아지안정제 개편은 한우산업의 종축산업 역할을 하고있는 번식 전문 농가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하지만 송아지안정제는 2012년 안정제 발동기준에 가임암소의 사육마릿수 기준을 포함하면서 사실상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발동이 되지 않게 설계가 되었고, 발동 기준 가격도 송아지 생산비와 농가의 손익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나. 한육우안정제로 확대 개편

- 송아지안정제의 도입은 소규모 번식농가 (1~2두)가 대다수이던 시절 도입된 제도임. 2011~2015년 한우 파동 당시 송아지안정제가 발동되지 못하도록 제도가 수정되면서 상당수의 소규모 번식농가가 산업에서 이탈하면서 송아지 가격이 폭등하자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상당수가 일관 사육으로 전환함.

- 소규모 번식농가만을 보호하는 송아지안정제로는 일관 사육이 일반화된 현재의 한우산업에서 한우 큰 소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과거 비육과 번식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큰 소 가격이 하락하면 송아지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비육농가는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일관 사육농가는 송아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큰 소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할 경우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없음.
- 일관 사육이 일반화된 상황을 고려해 번식농가의 손실만을 보전해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비육우 사육농가의 손실도 보전해 주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¹⁵⁾
- 현행 송아지안정제를 한육우안정제로 전환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전문기관 설립 필요¹⁶⁾

- 송아지안정제는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안정제가 개편되어 송아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제도가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른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 수입이 늘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분을 보상하겠다고 만든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수입 기여율이라는 명목하에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는 한우 가격 폭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가격안정제와 한우수급조절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묶어 실행하도록 해야 함.
- 근로자들이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15)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2019.12.1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645>

16)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한우수급조절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 한우마당 2022년 2월호.

산재보험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음.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업무 그리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 업무와 함께 재해예방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사업용자동차보험인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 사고 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를 낮추기 위한 캠페인과 운전자 교육, 사고를 낮추기 위한 연구사업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송아지안정제와 한우수급조절 업무도 패키지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용자동차공제조합과 같이 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데, 현재 책임이 있는 조직이 없다 보니 정부의 재량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불확실성이 높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전담 기관이 설립되면 가격 변동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농가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 보상하는 것과 함께,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수급조절사업도 진행해 안정 기금의 고갈 등을 막는 활동 또한 책임 있게 수행하게 됨.
-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제가 농가의 납부금과 정부의 매칭펀드로 조성되는 것을 감안해 사업용자동차공제조합과 같이 한우농가가 중심이 되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사업을 수행하는 가칭 한우산업안정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정부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전업농·가족농지원 확대

가. 저탄소 시대 대응¹⁷⁾

- 한우는 젓소와 함께 축산분야 최대 탄소배출 축종임. 국내 총배출량 대비 배출량은 미미하지만, 농업 부문에서 벼농사와 함께 대표적 탄소 배출원임을 감안한 탄소 저감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임.
-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가 이용하는 사료의 소화 이용률을 높이고,

17) 축산업의 기후 위기에 대한 진실과 대응방안. 한우협회 제5차 탄소중립대책위원회자료집 2022. 2월

분뇨처리의 고도화, 분뇨의 적정 시비, 경축순환 활성화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농가는 저메탄사료의 이용을 확대 또는 의무화하고, 경축순환을 위해 자가 생산 조사료 확대, 가축분퇴비의 농지환원 확대,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조사료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료 가공 확대 등의 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나. 경축순환활성화

- 저탄소농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가 경축순환농업임.
- 가축분퇴비를 활용한 작물재배는 화학비료를 활용할 때보다 토양의 탄소저장량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농촌진흥청은 토양의 탄소 함량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풋거름작물을 활용할 경우 18%, 가축분퇴비를 활용한 경우 44%, 가축분퇴비를 비료로 활용하며 돌려짓기를 했을 때는 58~75%까지 많아졌다고 밝힘.¹⁸⁾
- 축산농가가 생산한 퇴비를 경종농가가 활용하도록 지원과 함께 퇴비의 농지환원을 늘리고, 농업부산물을 사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우양축가들도 조사료 재배, 벼 등 작물 재배를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004년대 잠시 시행되었던 양축농가가 자가 사료포를 확보했을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다시 도입될 필요가 있음.¹⁹⁾

다. 보조 및 투융자사업 확대

-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경축순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상은 전업 양축농가 및 가족농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축가들의 환경문제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에서 열세에 있는 양축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8) 농촌진흥청. 유기 자원 활용과 돌려짓기, 토양 속 탄소 저장량 늘려. 2022. 1.14일자 보도자료

19)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1년 평가와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2005.4.2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9>

표 4-5 친환경 저탄소 양축을 위한 정부 지원안

분야	축산선택직불금	시설장비 지원
분뇨처리 고도화	○	폭기,교반기 설치 지원
퇴액비 시비	○	지중살포기 보급사업
조사료 가공		가공 장비 및 가공비 지원
경축순환 활성화	자가 조사료 생산 및 작물재배	
	퇴액비 자체 제조 소비	
	국내산 조사료 이용	

자료 : 김재민(2022) 축산업의 기후 위기에 대한 진실과 대응방안. 한우협회 제5차 탄소중립 대책위원회 자료집

주) 이상의 프로그램은 전업농 이하 규모의 한우사육농가 대상

3. 적정 사육두수 유지

가. 배경 및 필요성

- 적정 사육두수의 유지는 한우가격의 하락을 막고,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임.
- 특히 국제사회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농업부문 대표적인 탄소배출품목임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육두수의 유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임.

나. 방안

- 적정사육두수 설정은 육류수급상황과 환경부하,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조직, 제원,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4. 가칭 한우산업 전환법의 제정²⁰⁾

가. 배경

- 한우산업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쇠고기에 부과했던 관세 철폐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쇠고기의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던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지난해 일몰 중단되면서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에 직면해 있음. 더불어 분뇨처리 규제의 강화, 저탄소축산으로의 전환요구 등 여러 환경규제는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불확실성과 규제의 강화는 양축농가들의 사육 의지를 약화시켜 농가의 산업이탈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은 기업자본이 한우 사육업에 진입할 가능성을 크게 할 것으로 예측됨.
- 이번 조사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2022년 이후 지속될 한우 가격 조정기에 기업의 확장과 그에 따른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상당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 한우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했던 기업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고, 전업 및 중소 한우농가를 지원 등을 담은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나. 필요성

-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의제를 발의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을 펼치려 하였으나 각 축종별 입장이 달라서 통일된 의제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바 있음.
- 이미 기업 중심의 사육생태계가 완성된 육계와 오리, 기업의 영향력이 큰 양돈 그리고 기업이 진입 초기단계인 한우 등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온도가 크게 달랐기 때문. 문제는 축산관련 법과 제도가 기능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다 보니 각 품목의 입장차가 커 법률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20) 한우협 ‘한우산업전환법’ 도입 추진…여야 대선캠프 공감대. 농민신문 2022.2.21.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1464/view>

- 양계와 오리, 양돈의 경우 일찍 기업 중심의 축산계열화가 시도되어 정착되었으며,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 중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계열화관련법이 제정됨. 하지만 이 법은 기업중심의 계열화가 정착한 육계를 모델로 만들어지면서 한우산업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차지하고 있음.
- 전문가 좌담회와 현장간담회에서 한우협회나 대다수 한우농가들도 기업의 한우산업의 직접적 진출에는 크게 반대하는 상황임.
- 또한, 한육우송아지안정제의 경우도 축산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비육우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급조절프로그램과 패키지화가 필요하지만,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축산법에 이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한육우 산업은 축산분야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급조사비 생산 및 이용 확대, 경축 순환 활성화, 저 탄소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여러 지원과 규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타 품목을 함께 다루는 축산법에 담는 것 또한 법률 체계상 쉽지 않은 상황임.
- 1960년대 제정된 축산법은 축산업이 막 생겨나던 시절 제정되어, 축산업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개정했음. 하지만 축산업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어섰고, 하나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커졌고, 환경, 위생, 방역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늘어났고, 품목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 또한 상이해 하나의 법률에 이를 모두 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능 중심의 법률체계를 품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능 중심의 법률은 기본법으로, 품목 중심의 법률은 실제 이를 응용하고 적용하는 법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가칭 “한우산업전환법”은 축산법에 명시된 개량 관련, 축산업허가 관련, 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관련한 내용과 함께, 가축분뇨법 상의 환경 관련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의 방역관련 조항,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유통 관련 내용까지 함께 담아냄으로써 하나의 법률체계 안에서 산업의 규제와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2021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기업 축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이를 법제화하려 하였으나 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된 품목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사례가 있음.
- 기업에 대한 규제를 축산법에 담는 것은 다른 품목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한우산업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에 관련 내용을 담아 농가 중심의 전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현행 축산 행정조직도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품목중심으로 전환해 하나의 국과 과에서 한우 등 품목 전반의 행정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내용

- 한우산업전환법은 앞서 기업의 한우 산업 진출 확장억제와 농가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개량 및 고유유전자원인 한우의 보호와 관련한 사안, ②축산업(기업포함) 허가와 관련한 사안, ③수급조절과 관련한 사안, ④저탄소 등 축산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안, ⑤한우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한우공제조합설립에 관한 사안, ⑥사육주체(농업인, 비농업인)별 사회적 책임 차등 부여에 관한 사안, ⑦한우세계화(수출)에 관한 사안, ⑧공익적직불제와 관련한 사안을 담을 필요가 있음.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 이 연구의 목적은
 - 기업자본의 축산업 생산부문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자본의 축산업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 나아가 한우 농가 중심의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한우 사육 주체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먼저 이 연구에서 기업자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농업법인 중 기업이 출자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영농조합
 - 한우계열화사업자
 -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일반 농가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범위에 포함시켜 조사함)
-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2. 연구 결과 요약

(1)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산업 진입 현황

- 이번 조사에서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산업 진입 조사 대상은 ①기업이나 기업특수관계인이 농업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농업법인 등에 지분투자 등을 통해 직접 한우 사육을 하는 경우, ②기업이 위탁을 통해 한우를 사육하는 경우, ③농축협 등 수평적 협업조직이 한우를 사육하거나 위탁사육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는 약 12만8천여두로 전체 사육 규모 대비 4%로 추정됨.
- 한우자조금 2017년 선행 조사와 비교한 결과,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두수는 5만9,145두가 증가해 증가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사육두수는 27%가 증가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됨.

표 5-1 기업 등 비농업인 한우 사육 증가율

(단위 : 마리, %)

	2017년3월	2021년1월	증가율
총사육두수	2,510,519	3,188,961	27
기업축산 사육두수	69,248	128,393	85

(2) 기업의 한우 사육에 대한 농가 인식 조사

-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 기업의 한우 산업 직접 진출에 대한 반대의견은 90.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기업의 위탁사육은 대부분 반대의 의견이 많지만, 찬성의견은 6.4%이고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18.2%로 상대적으로 직접 진출에 비해 반감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74.4%로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직접 진출에 비해서는 반감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서는 찬성의견 14.4%,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기업의 위탁사육에 비해서 반감이 작은 것으로 조사됨.

- 농가들이 기업 등이 한우 사육업 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69.4%가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고, 두 번째는 17.4%가 “공급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6.6%가 “한우산업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 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를 지적하였음.

표 5-2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에 대한 한우농가 인식조사 요약

항 목	찬성	반대	농가의 선택에 맡김
기업의 직접 사육	9.7	90.3	-
기업의 위탁사육	6.4	75.4	18.2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사육	25.6	74.4	-
농축협 위탁사육	14.4	58.4	27.2

(3)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

- 기업의 한우 산업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규제 등을 통해 확장을 억제시키고,
 - 전업농과 중소농가에게는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 기업과 농업인 간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맞추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농가의 피해가 가시화된다면
 -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진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의 도입, 중소기업적합업 종제도처럼 직접적인 확장억제, 보험법 및 방송법에서의 수직계열화업체의 독점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항 등을 활용해 농업인의 한우 사육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기업자본에 대한 규제의 도입과 강화는 규제 대상의 반발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규제 도입에 장시간이 필요하거나 도입에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우농가를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 등의 비농업인 사육주체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중심의 건전한 한우 사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 가격 변동 위험에 대응해 송아지 안정제를 개편해 한우 안정제로 확대 적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번식농가 뿐만 아니라 비육농가까지 포함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동시에 적정사육두수 유지, 수급 조절 전담 기관의 설치, 저탄소 등 친환경 한우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선택 직불제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한우농가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가칭) 한우산업전환법을 제정하여, 한우 품목 중심으로 하나의 법률안에서 한우산업 관련 인허가, 수급조절, 동물복지, 저탄소 및 친환경축산으로의 전환, 경영안정, 기업 축산에 대한 규제 등의 프로그램을 담을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누리집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연도별 사업결산보고서
-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packers-and-stockyards-act>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서비스
<http://uni.agrix.go.kr/docs7/biOlap/fixType.do?reportId=report17>

신문

- 축산진흥계획 확정. 동아일보. 1968.07.30. 3면
- 재벌의 축산투자 적극유도. 경향신문. 1974.05.18. 1면
- 올해만 사료값 20% 인상..한우협회 사료 안정기금 조성 필요해. 농업경제신문. 2021.7.27. .
<https://www.thekpm.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06>
- Biden seeks to lift limits on farmer deals with meat processors, tractor. REUTERS. 2021. 7.7.
<https://www.reuters.com/world/us/exclusive-biden-sides-with-farmers-over-right-repair-tractor-software-battle-2021-07-06/>
-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강력 반발. 한국일보. 2012.11.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211201788070682>
- 지상중계-‘기업자본 축산업 사육부문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한국농업신문. 2016. 10.31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0>

-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2019.12.1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645>
-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한우수급조절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 한우마당 2022년 2월호.
-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1년 평가와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2005.4.2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9>
- 한우협 ‘한우산업전환법’ 도입 추진…여야 대선캠프 공감대. 농민신문 2022.2.21.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1464/view>

문헌

- 하광옥(2017)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연구. (61~67p).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박종국(2012) 산업조직론. 법문사 (264p)
- 서성원(2017)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부문 진출의 영향 : 정책 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오세익 외(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태호(2016) 농업생산의 다원적기능 정책과 농촌정책. 2016년 농업농촌의 길
- 장영신·강상구(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김재민(2022) 축산업의 기후 위기에 대한 진실과 대응방안. 한우협회 제5차 탄소중립대책위원회 자료집
- 농촌진흥청. 유기 자원 활용과 돌려짓기, 토양 속 탄소 저장량 늘려. 2022.

1.14일자 보도자료

- 김한중(2020)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축산법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보험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부 록 1. 육계산업 계열화 영향²¹⁾

1. 육계 계열화가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

- 기업자본이 사육업을 주도하는 육계를 살펴보면, 사육 규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임. 닭고기 관련 5개 사²²⁾가 육용 원종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육계 공급량이 결정되고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시장점유율이 높은 닭고기 회사가 적정한 숫자보다 많은 원종계를 도입하면 전체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사육 농가들이 손실을 보며 폐업이나 위탁사육 참여를 선택하게 됨.
- 육계계열화사업자는 종계, 부화, 사료,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통합 경영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 원자재를 원가 수준에서 이용해 닭고기를 생산하나, 이러한 원자재를 소량으로 구매하는 일반농가의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열화사업자의 생산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음.
- 또한 기업들은 위탁농장의 사육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양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상황임.

부표 1-1 육계생산지수 변화 추이

(단위 : 지수,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계열화 농가의 생산성(A)	203.5	233.4	262.9	269.3	240.2	294.0
전체 농가의 생산성(B)	204.2	218.4	252.1	250.9	268.1	272.2
상대적 생산성	-0.3%	6.9%	4.3%	7.3%	-10.4%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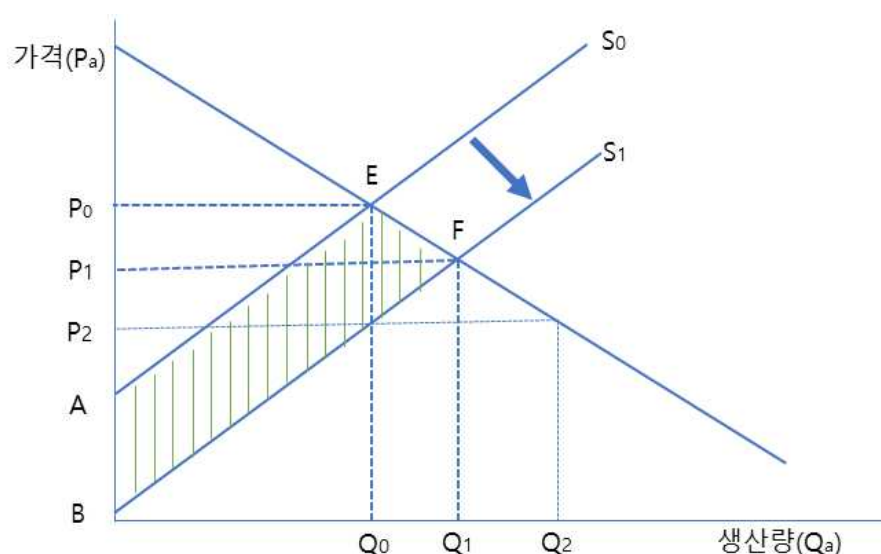
자료 : 우병준(2015) 축산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 육계산업을 중심으로<농촌경제연구원>

주) 육계업계는 생산성 지표로 '생산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산지수는 (육성률×출하체중)÷(사육일수×사료요구량)이라는 식으로 계산되고 있음.

21) 하광옥(2017)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연구. (61~67p).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2) 5개 사는 하림, 삼화원종, 사조, 참프레, 체리부로

- <부표 1-1>에서 언급한 육계계열화 농가의 생산성이 전체 농가의 생산성보다 약 6~8% 정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 하지만 전체 농가의 생산성에는 계열화 농가의 생산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생산성 차이는 8%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부도 1-1>은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일반 육계 농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내는 그래프로 일반 농가의 평균생산비는 P_0 라 가정될 때 시장가격이 P_0 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이익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공급량이 최소 Q_0 이하에서 결정되기를 원하지만, 계열화사업자의 평균생산비는 P_2 이기 때문에 계열화사업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P_1 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산출량을 Q_1 으로 조절하면 공급곡선은 S_0 에서 S_1 으로 이동하게 됨.



주) P_0 는 일반농가의 평균생산비, P_1 는 기업의 목표가격, P_2 는 계열화 업체의 평균생산비

부도 1-1 일반육계농민과 계열화사업자의 공급곡선

- 기업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생산비 차이를 활용해 농민들이 원하는 총 공급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나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게 되며, 수급조절사업의 실효성도 낮아지게 됨.
- 기업의 사육비중이 일반농가보다 높지 않을 때에는 농가들에 의해 산출량이

Q_0 로에 맞춰질 경우 일반 사육농가보다 사육비용이 P_2 로 기업들은 일반농가보다 최소 $P_0 \sim P_2$ 만큼의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서 보다 빠른 자본축적이 가능하고 시장점유율을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

2. 계열화 진척에 따른 시장 독과점 심화의 문제점

- 기업자본의 사육업 투자 확대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각종 투입재의 구매 비용을 낮추고 거래교섭력 확대, 유통비용절감, 거래비용감소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축산물의 단위당 평균 생산비와 거래비용, 유통비용을 낮추는 모델이 됨.
- 하지만 기업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얻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축산물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축산물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를 지출하는 개별 농가와 중소계열업체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대 기업자본에 농가들이 편입되는 현상이 육계와 오리 등의 품목에서 관찰되고 있음.
- 실제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육계업의 경우 육계계열화업체들은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1%의 이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일반농가들이 위탁 사육을 하지 않고 닭을 사육하는 것이 불가능해 짐.

부표 1-2 주요 육계계열화 회사 실적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하림	매출	822,135	866,516	828,599	805,855	895,465
	영업이익	20,914	17,023	1,510	-43,423	6,110
	이익률	2.5%	2.0%	0.2%	-5.4%	0.7%
마니커	매출	216,301	237,729	269,906	242,241	215,406
	영업이익	-4,741	117	566	-14,673	-30,845
	이익률	-2.2%	0.0%	0.2%	-6.1%	-14.3%
체리부로	매출	290,878	314,521	255,938	271,426	278,038
	영업이익	15,918	9,468	-3,133	-13,900	-17,428
	이익률	5%	3%	-1%	-5%	-6%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각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참조)

- 이는 장기적으로는 중소 닭고기회사의 구조조정을 촉발시켜 대기업 중심의 독점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농가 사육수수료 인하 등 수요독점과 공급독점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큼.(서성원 2017)²³⁾
- 대규모 기업자본의 사육부문 진출은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독과점화를 촉진해 이익 대부분이 소수의 대규모 축산기업에 귀속되고 소비자와 사육농가의 후생을 포함한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현재보다 줄어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3) 서성원(2017)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부문 진출의 영향 : 정책 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 록 2. 농가설문 조사표

1. 기업자본이 한우사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2. 만약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골라주세요.
(반대하시면 응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 ① 한우사육 생산성 증가
② 계약 사육농가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환경오염 배출량 감소
④ 송아지 가격 상승시 입식비 부담
⑤ 기타

3. 만약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골라주세요.
(찬성하시면 응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 ① 기업자본의 시장 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
② 농가와 계약시,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위탁농가의 불이익
③ 한우산업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
④ 공급과잉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
⑤ 수요 증가에 따른 송아지 가격 상승
⑥ 기타

3-1. 귀하는 농축협이 생축장에 비육우를 사육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4. 기업의 한우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5. 귀 농장에서는 위탁사육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② 위탁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6. 귀하는 기업자본을 통한 위탁사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6-1. 귀하는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조합과 조합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7. 귀 농장의 경영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개인 ② 협동조합 ③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④ 기타

8. 귀 농장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①서울인천경기강원 ②대전세종충청 ③광주전라제주 ④부산대구울산경상

9. 귀 농장의 사육규모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20두 미만 ②20-49두 ③50-99두 ④100두 이상

10. 귀 농장의 자산(자본금+부채)의 규모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5억 미만 ②5-10억 ③10-20억 ④20억 이상

<소중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인 쇄 2022년 3월

발 행 2022년 3월

발 행 인 민경천

발 행 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캐피아회관 2,3층

TEL 02-522-4292 | FAX 02-522-3605

연구수행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본 보고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있으며, 본 연구결과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명기한 경우에만 사전 승인 없이 무상으로 인용할 수 있음.